

2024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기준·지침

중 등

2024학년도
인사관련
기준·지침

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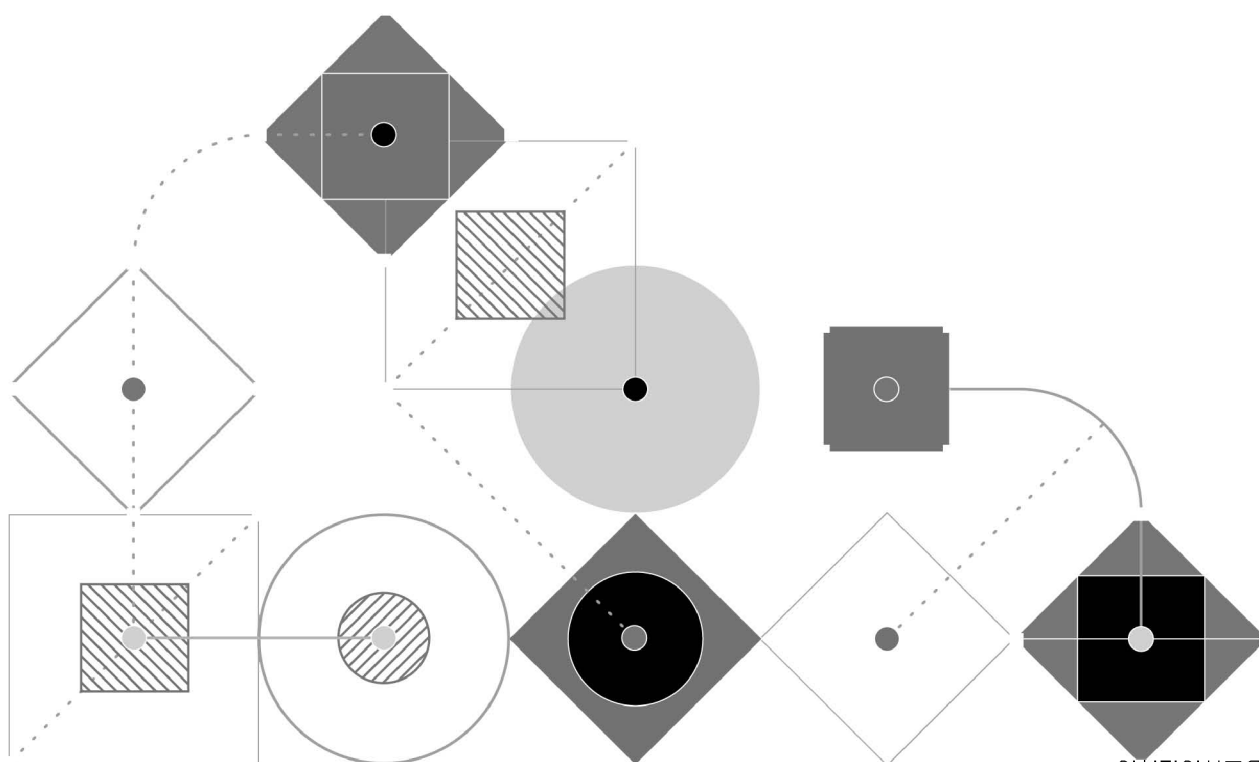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CONTENTS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3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영양교사)	31
3.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 기준	43
4.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53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중등)	63
6.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기준	81
7.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85
8.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남부교육지원청	99
9.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북부교육지원청	117
10.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동부교육지원청	135
1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서부교육지원청	151
1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강화교육지원청	17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1982. 1. 26. 공포	1999. 11. 13. 개정	2012. 1. 10. 개정
1983. 2. 28. 개정	2000. 12. 13. 개정	2012. 11. 14. 개정
1984. 2. 28. 개정	2001. 1. 16. 개정	2013. 11. 20. 개정
1984. 8. 31. 개정	2001. 11. 28. 개정	2014. 7. 11. 개정
1985. 7. 24. 개정	2001. 12. 11. 개정	2014. 11. 17. 개정
1986. 7. 24. 개정	2002. 10. 21. 개정	2015. 7. 27. 개정
1987. 11. 20. 개정	2003. 11. 13. 개정	2016. 7. 25. 개정
1988. 6. 29. 개정	2003. 12. 31. 개정	2017. 1. 25. 개정
1989. 12. 20. 개정	2004. 11. 8. 개정	2017. 7. 18. 개정
1991. 11. 20. 개정	2005. 11. 17. 개정	2018. 7. 19. 개정
1992. 9. 30. 개정	2005. 12. 6. 개정	2019. 8. 06. 개정
1993. 10. 25. 개정	2006. 11. 17. 개정	2020. 1. 16. 개정
1994. 11. 10. 개정	2007. 11. 16. 개정	2020. 7. 24. 개정
1995. 6. 20. 개정	2008. 11. 21. 개정	2021. 7. 16. 개정
1995. 11. 15. 개정	2009. 11. 19. 개정	2022. 7. 14. 개정
1996. 11. 11. 개정	2010. 11. 18. 개정	2023. 7. 6. 개정
1997. 8. 18. 개정	2011. 1. 13. 개정	
1997. 11. 11. 개정	2011. 11.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중등교원(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포함)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11. 17., 2016. 7. 25.)

제2장 신규 채용

제3조(신규임용)

-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중등교사임용후보자명부(일반)에 등재된 과목별 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름,

이하 같음) 신규임용후보자는 근무지를 지정할 때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6., 2020.7.24.)

②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선발 교사의 신규임용은 중등교사임용 후보자명부(제한선발)에 등재된 과목별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며, 제한선발 교사의 전보는 별도 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4.)(개정: 2021.7.16.)

③ 공모교장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2.11.14.)

제4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장 전 보

제5조(전보 계획)

- ①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인사 관계 법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기준(중등)’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인사관리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1.17.)
- ③ (삭제: 2003.2.28.)
- ④ (삭제: 2004.2.29.)

제6조(인사군과 전보과정)

- ① 고등학교의 인사군은 남녀 학교, 고등학교의 구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4개 일반인사군과 각 1개 공동인사군 및 기타인사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7.27., 2016.7.25., 2017.7.18., 2018.7.19., 2020.1.16., 2020.7.24., 2021.7.16., 2023.7.6.)

지역	일반인사군				공동 인사군(13교)	기타 인사군(10교)
	1군(20교)	2군(20교)	3군(20교)	4군(20교)		
계양구	계양고 인천예일고 인천인혜학교	인천세원고 인천효성고 작전고	계산고 작전여고 계산공고	계산여고 서운고 안남고	인천산업정보학교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영종국제물류고 미추홀외고 인천해밀학교 인천진산과학고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인천예술고 인천체육고 인천온라인학교	• 농어촌지역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 • 도서벽지학교 백령고, 연평고 대청고, 교동고 서도고, 덕적고 강화고, 강화여고 인천영흥고
미추홀구 중구	인천여상 인화여고 인천공항고	인일여고 선인고 학익고 인천대중예술고 인천정보과학고	제물포고 인천기계공고 인천비즈니스고 인천영종고	인천고 인천소방고 문학정보고 학익여고 인천청인학교 인천중산고		
남동구	동인천고 석정여고 인천남동고	도림고 인천고잔고	인천남고 인천만수고 인천송천고 인천청선학교	인천논현고 미추홀학교		
부평구	부광여고 부평공고 인천부흥고	부평고 부개여고 인천영선고 인천미래생활고	부개고 삼산고 인천산곡고	부광고 부평여고 인천상정고		
서구	가좌고 인천초은고 인천청라고 인천마전고	검단고 인천신현고 인천해원고	가림고 백석고 인천디자인고 인천서희학교	가정고 인천원당고 인천아라고		
연수구	연수고 인천생활과학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연송고	연수여고 인천해양과학고 인천연일학교	인천여고 신송고	옥련여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해송고		

② 근무기간

1. 동일직위, 동일교(직속기관 포함) 근무기간은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이상 5년(기숙형공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기타인사군의 학교, 인천해밀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Wee센터,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단, 담당 누적 근무기간이 3년인 경우)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간주한다. (개정: 2012.11.14., 2014.11.17., 2016.7.25., 2017.7.18., 2019.8.6., 2020.7.24., 2021.7.16.)
2. 중학교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정기전보일 현재 현임교에서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17.7.18., 2022.7.14.)
3. 중·고간 전보시 근무기간은 제2항 제1호에 준한다.
4. (삭제: 2002.10.21.)
5. 교육전문직원의 동일기관 내 동일직위 근무기간은 1년(365일) 이상 5년 이내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6. (삭제: 2004.2.29.)
7. 현임교 5년 이상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간주한다.
8. 정월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의 현임교 근무기간은 현임교 만기근속 연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③ 전보서열 명부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정원과목별로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 전보서열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 항목 및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 (개정: 2012.11.14., 2022.7.14.)

만기 근무 기간	평 정 점		상한점
	1월	1년	
5년	0.100	1.20	6.00
3년	0.167	2.00	6.00

나. 교육활동 경력 평정 (개정: 2012.11.14., 2015.7.27., 2016.7.25., 2020.7.24., 2021.7.16., 2022.7.14., 2023.7.6.)

교육활동 경력	만기 근무 기간	평정점	
		1월	1년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파견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교사, 공동실습소 근무교사, 교무행정지원팀 소속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소속교사, 신설학교 겸임근무교사	5년	0.100	1.20
	3년	0.150	1.80

1)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만기 근무기간 5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3년 이상 3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2.4점 가산
4년 이상 4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2점 가산

나) 만기 근무기간 3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2년 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8점 가산

3) 1)과 2)에서 사용한 교육활동 경력을 제외하고, 보직교사 실경력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월 0.100점을 추가 평정할 수 있다.

다. 교육총경력 환산점

당해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 현재 호봉을 5% 환산하여 점수화한다. 단, 2.0 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8.)

라. 근무성적 환산점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에서 80점을 공제한 점수의 1/20을 근무성적환산점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16.7.25., 2018.7.19.)

마. 가산점 평정

- 1)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른 서해5도 소재 학교에서 만기 근무한 교사의 전보평정점에 2.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19.8.6.)
 - 2) 강화군 서도면과 옹진군 덕적면 소재 학교에서 만기 근무한 교사의 전보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19.8.6.)
 - 3) 현임교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교사 또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교사에게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의 10%를 가산한다.
(개정: 2019.8.6., 2020.7.24.)
 - 4)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보평정점에 월 0.02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19.8.6.)
 - 5) 마목의 1)과 2)를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만기 근무한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 교사의 전보평정점에 0.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7.16.)
 - 6) 현임교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의 전보평정점에 1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7.16.)
3. 전보서열 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은 1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처리한다.
 4.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는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활동 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자,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17.7.18.)
 5. 제7조 제7항에 따라 전보유예가 확정된 자는 전보서열 명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24.)
 6. 전보서열 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정기 전보일에 한하며, 학기 중 결원보충은 신규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④ 전보의 과정

동일직위로 동일교, 동일인사군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의 전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학교

가.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이 작성한 순위 명부에 의하여 동교과 동수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급 증감으로 인한 교원 정원을 조절할 경우,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근무교원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나. (삭제: 2020.7.24.)

다. (삭제: 2007.11.16.)

2. 고등학교

가. 학교 희망

1) 본인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하나의 인사군에 속한 학교 중 3개교까지 희망할 수 있다.

2) 공동인사군에 속한 학교를 희망할 경우 공동인사군 및 1개의 일반인사군에서 총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3) 직전근무교는 희망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교사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개정: 2019.8.6.)

라) 공동인사군에 속한 학교 전출·입 희망 교사

마)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무용, 음악, 연극·영화 담당 교사 (개정: 2014.11.17., 2019.8.6., 2020.7.24., 2021.7.16.)

바) 전공교과가 2개 인사군 또는 특성화고 3개교 이하에만 개설된 특성화고 전공교과 교사 (개정: 2019.8.6., 2020.7.24.)

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로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사

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전출·입 희망 교사

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전문교과 담당 교사 (삭제: 2010.11.18.)(신설: 2010.11.18.)

차) 본 규정으로 전보 불가능한 교과 교사 (신설: 2010.11.18.)

4) (삭제: 2016.7.25.)

5) (삭제: 2012.11.14.)

3. 기타지역 전보

기타지역 전보는 제6조 기타인사군 및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6조 제1항의 기타인사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6조의 인사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0.7.24.)

가.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선발 교사의 최소 근무년한 내 전보는 지정된 근무처로 제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0.7.24.)

나. 기타지역 전보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통합전보서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7.24.)

- 1)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평정점에서 전보대상자가 기취 득한 도서·벽지근무 가산점을 공제한 평정점에 따른 전보서열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
- 2) 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에 한하여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지도한 실적이 있거나 또는 복수자격증 <부전공자격증 포함> 소지자는 교육감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20.7.24.)

3) (삭제: 2009.11.19.)

4) (삭제: 2009.11.19.)

5)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제6조의 기타 1,2,3 군과 공동인사군으로의 전입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관내 전보 후 결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7.24.)

6) 희망자가 없을 경우 제7조 제7항 제19호의 유예희망자를 우선 충원한 후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14.11.17., 2020.7.24.)

- 1순위: 추가 내신 신청자
- 2순위: 신규 임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3순위: 타시·도 전입자 중
 - 교육경력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늦은 자

- 4순위: 관내전보내신서(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출한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통합 전보서열명부 최하위 자 순으로 한다. (단, 기타지역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개정: 2015.7.27., 2020.7.24.)
 - 4순위 중 전보서열평정점 합계가 동점일 경우,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경력이 적은 자, 생년월일이 낮은 자의 순으로 전보한다. (개정: 2020.7.24.)
- 4. 특수교사 및 비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2.11.14.)
 - 가. 특수교사
 - 1) (삭제: 2016.7.25.)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학교 등에서 고등학교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 전보내신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근무경력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동일한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로 한다. (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만기 근무자는 제외) (개정: 2016.7.25., 2018.7.19., 2020.7.24., 2021.7.16.)
 - 3) 특수학교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 (신설: 2020.7.24.)(개정: 2021.7.16.)
 - 1순위: 중학교 등에서 고등학교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 전보내신자 중, 최근 10년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 및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근무경력, 특수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자 (경력이 동일한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순)
 - 2순위: 타시도 전입자 중
 - 교육경력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낮은 자
 - 3순위: 신규 임용자
 - 4순위: 중학교 등에서 고등학교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 전보내신자 중, 최근 10년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근무경력, 특수학교 근무경력의 합산경력이 적은 자 (경력이 동일한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순)
 - 4) 특수교육지원센터 만기 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 5) 현임교에서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을 3년 누적 담당하여 만기가 된 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2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8.6.)(개정: 2021.7.16.)

나.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

- 1) 기타지역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 내신자 중, 기타지역으로의 내신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지역 근무경력이 적은 순에 의거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 6)의 순에 따른다. (개정: 2020.7.24.)
- 2) 기타지역 만기 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다. 전문상담교사

- 1) Wee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16.7.25., 2018.7.19., 2019.8.6., 2020.7.24., 2021.7.16.)
 - 1순위: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유예를 신청한 자
 - 2순위: 타시도 교육청 전임교사
 - 교육경력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낮은 자
 - 3순위: 신규임용자
 - 4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고등학교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 경력이 없는 교사
 -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 5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고등학교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 경력이 적은 교사(경력이 동일한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순)
- 2) (삭제: 2021.7.16.)
- 3)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정기 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시 인사군과 학교의 배정은 전보서열 명부 고순위자순에

의하되, 일반인사군과 공동인사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1. 교육상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로, 전보서열 명부 순위에 의하여 정원과목별 전입예정인원수 2배수의 범위 내인 교사. 단,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전보 내신 전에 공개한다.
 2. 신설학교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설립사무 담당을 목적으로 우선전보를 요청한 교사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전보일 기준 만57세 이상인 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중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교사
(개정: 2014.11.17., 2017.7.18., 2019.8.6.)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개정: 2017.7.18., 2019.8.6.)
- ② 다음 각 호의 교사에 한하여 해당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제1항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발령할 수 있다. 단,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우선전보 발령할 수 없다.
1. 인천과학고등학교 교사,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인천체육고등학교 교사,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교사
(개정: 2012.11.14., 2017.7.18., 2018.7.19., 2020.7.24.)
 2. (삭제: 2018.7.19.)
 3.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할 교사 (개정 : 2013.11.20., 2018.7.19.)
 4. (삭제: 2013.11.20.)
 5. (삭제: 2003.12.31.)
 6. (삭제: 2012.11.14.)
 7.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 교사 및 공업계열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근무 교사 (개정 : 2013.11.20.)
 8. (삭제: 2013.11.20.)
 9. (삭제: 2013.11.20.)

10.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전공학과와 업무를 담당할 교사
 11. (삭제: 2013.11.20.)
 12. (삭제: 2018.7.19.)
 13. (삭제: 2013.11.20.)
 14. (삭제: 2013.11.20.)
 1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학교의 전문 교과 담당교사
 16.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및 **인천온라인학교** 교사 (개정: 2012.11.14., 2013.11.20., **2023.7.6.**)
 17. 신설(이전)학교의 경우 3년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단, 전입예정교사의 20% 이내) (신설: 2014.11.17.)(개정: 2015.7.27., 2016.7.25.)
 18. 기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사
(호변경: 2014.11.17.)
- ③ 희망한 학교에 전보희망 교사가 초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④ 중학교 교사의 고등학교로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 (단, 제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련계열 교사, 제7조제2항제16호에 해당하는 교사 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는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8.6., 2020.7.24.)
 2.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 ⑤ 고등학교 교사의 중학교로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 (단,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는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2. 고등학교 정원조정 교과 교사
 3.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 ⑥ 인사군내의 교사충원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다음 순에 의한다.
1. 관내 전보교사
 2. 타 시·도 전입 교사
 3. 신규임용 교사

⑦ 전보의 유예

만기근속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1.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하는 체육교사는 1년씩 2회
(단, 체육고등학교의 체육 특기 지도교사는 1년씩 3회)
2. (삭제: 2013.11.20.)
3. 연구학교 및 정책추진 학교 근무자로서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에 한하여 1년 (개정: 2012.11.14.)
4. (삭제: 2002.10.21.)
5.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자는 1년씩 2회
6. (삭제: 2010.11.18.)
7.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음악, 미술, 무용 담당교사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음악, 무용, 연극·영화 담당교사 중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는 1년씩 3회
(개정: 2013.11.20., 2018.7.19., 2020.7.24.)
8.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직업계열 각종학교의 전공교과 교사 중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교사는 1년 (단, 학과 신설·개편 업무추진의 경우 신설·개편학과별 1명에 한하여 1년씩 2회) (개정: 2013.11.20., 2021.7.16.)
9. (삭제: 2013.11.20.)
10. (삭제: 2013.11.20.)
11. (삭제: 2013.11.20.)
1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지도실적이 있고 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를 위해 필요한 교사는 1년씩 3회 (개정: 2013.11.20.)
13.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근무교사로서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및 **인천온라인학교** 근무교사로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자는 1년씩 2회
(개정: 2014.11.17., 2018.7.19., 2022.7.14., **2023.7.6.**)
14.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는 1년 (개정: 2013.11.20., 2019.8.6.)
15. (삭제: 2014.11.17.)

16. (삭제: 2010.11.18.)

17. (삭제: 2013.11.20.)

18. 기숙사운영학교 근무교사로서 학교 경영에 특히 필요한 자는 1년씩 3회
(신설: 2010.11.18.)

19. 기타인사군 학교 중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자 (단, 당해학교로의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11.17.)

20. 기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호변경: 2014.11.17.)

⑧ 전보의 유보

1. 대치 불가능한 교과 담당자는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보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3. (삭제: 2007.11.16.)

⑨ 초빙교사

1.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 요청 시 현임교 만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사 배정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12.11.14.)

가. (삭제: 2012.11.14.)

나. (삭제: 2013.11.20.)

다. 교장공모제 학교: 50% (삭제: 2013.11.20.)(개정: 2013.11.20.)

라. 자율형 공립학교: 100%

마. 일반학교: 10% (개정: 2014.11.17.)

바. 자율학교: 30% (단, **2024. 3. 1.까지 지정된** 교과교실제 선진형에 한함)
(신설: 2010.11.18.)(개정: 2012.11.14., **2023.7.6.**)

사. (삭제: 2014.11.17.)

아. 자율학교: 50% (단, **결대로자람학교**에 한함)

(신설: 2014.11.17.)(개정: 2015.07.27., **2023.7.6.**)

2.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 임용절차, 인사 및 교사초빙 응모자 제출서류 등은 ‘교사 초빙제 실시계획’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의 A, B, C지역은 초빙을 할 수 없으며, D, E지역의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자체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0.11.18.)(개정: 2014.11.17.)

3. (삭제: 2010.11.18.)

4. (삭제: 2014.11.17.)

5. (삭제: 2014.11.17.)

6. 기타인사군 소속 전보대상교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가산점을 받는 특수지역 학교로 응모할 수 없다.

⑩ (전보의 특례) 도서·벽지학교의 폐교, 폐과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발생 시 해당 과원 교사에 대하여는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중·고간 통합하여 기타지역으로 우선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13.)

⑪ 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 내신하여야 한다. 단, **상피제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화군 소재 중학교, 옹진군 또는 강화군 서도면과 교동면 소재 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8.6.)
(개정: 2023.7.6.)

제8조(비정기 전보)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원은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및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3.11.20., 2021.7.16.)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6.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
7.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8. 해당학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내신한 자
9. 수석교사 직위를 면하는 자 (신설: 2019.8.6.)
10.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자 (신설: 2019.8.6.)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자(신설: 2019.8.6.)
12.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신설: 2021.7.16.)

제9조(시·도간 교류) 교사의 시·도간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 기준’에 의한다.

제10조(국·공립간 교류)

- ① 교원의 국·공립간 교류는 동직위(급), 동교과,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장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나 동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는 동일 조건으로 1:1 동수교류를 한다.
-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국·공립간의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의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에 따른다. (신설: 2012.11.14.)

제10조의2(유·초·중등간 교류) 보건의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유·초·중등간 교류는 동교과,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방교류 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2021.7.16.)

- ①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서열 평정점은 필요한 경우 중등교사로 간주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산정한다.

제11조(교장 및 교감의 전보)

- ① 교장 및 교감의 전보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인사군(학교군), 근무기간, 전보 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범위 내에서 해당직 경력, 지도관리능력, 청렴성, 학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 2015.7.27.)
- ② 교장, 교감은 내신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3.12.31.)
- ④ 제7조 제7항 제5호 및 제8조는 이를 교장, 교감에도 적용한다.
- ⑤ (삭제: 2004.2.29.)
- 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하되, 당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1조의2(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전보한다. (본조신설: 2014.11.17.)

제4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제12조(교원의 전직)

- ①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본인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2017.7.18.)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 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교장 및 원장 제외)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시에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임용한다. (개정: 2015.7.27., 2018.7.19., 2020.1.16.)
2.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임용 후보자 전형에 합격한 자 중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분야별 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3.11.20., 2019.8.6.)
- ③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 ④ 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 전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임용후보자 전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1.20.)

제13조(교육전문직원의 전직)(개정: 2013.11.20.)

- ① 교육전문직원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 이전의 직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경력 합산이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의 직위로,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경력 합산이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 ②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 ③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 ④ (삭제: 2003.11.13.)
- ⑤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은 본인의 희망, 수급,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제5장 승진임용

제14조(승진임용)

① 교원

교원의 승진임용은 당해 학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1999.7.5.신설)
(개정: 2014.11.17., 2017.7.18.)

- 1. (삭제: 2014.11.17.)
- 2. (삭제: 2014.11.17.)
- 3. (삭제: 2012.11.14.)

② 교육전문직원 (개정: 2013.11.20.)

장학사·교육연구사를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할 수 있다.

- ③ 승진임용에 있어서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인 자는 용진군 관내 및 강화군 관내 도서지역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1.25.)

제15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후보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승진임용 및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한) (개정: 2017.7.1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장(초임·중임) 및 교감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징계처분기록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기록이 정년 내에 말소되지 않거나 말소 시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 자격연수 이후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③ 자격연수 진행 중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대상자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17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학급담임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20.)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우선전보 요청자 및 전보 유예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활동 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1.7.16.)
8.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을 자문할 경우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7.27)

부 칙 (2001. 12. 11. 이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가. 이 기준 개정시행일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임교는 이 기준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과 전보과정의 학교로 보며, 현임교(기관)의 근무기간도 동기준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인천과학고등학교 근무기간은 1996.3.1.부터 기산한다.
 - 다. <삭제>
 - 라. 제7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1일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 강남종합고등학교, 항공정보산업고등학교로 전입한 교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
 - 마. 강화읍 접적지역 ‘나’ 급지 학교 소속 교사 중
 - 1) 2001년 3월 1일자로 전입한 교사가 현임교에서 타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04년 3월 1일까지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2) 2001년 2월 28일 이전 전입한 교사 중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도서·벽지학교 근무가산점이 없는 자가 강화군 관내 특수지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2004.3.1일까지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3) 위 (1), (2)에 해당하는 교사가 경합이 될 경우 기준 제6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함.
3. 본 기준 제5조 제3항은 2002년 2월 28일 이후 삭제한다.
4. 본 기준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5.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2001.1.1.자로 접적 지역 ‘나’ 급지로 지정된 학교의 교사는 2001.3.1.자 전보에 한하여 1년 간 전보유예를 할 수 있다. (2001.1.16. 신설)

부 칙 (2002. 10.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3.)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교동고, 서도고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4항 제2호 나의 (2), (3)에도 불구하고 2004.2.29.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직전교 전입 희망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4항 제2호 가의 (3)에도 불구하고 2004.2.29. 이전에 강화지역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3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5.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서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 우선 전보인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전보내신서는 2007.3.1.자 인사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인천공항공등학교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6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제7조 제8항은 2005.3.1.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2. 5.)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3.1.자 인사발령부터 시행한다.
2. (교육활동 경력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2007.3.1.자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전보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4항 제2호 가목 (4)는 2006.3.1.자 기타학교군 학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4. (가산점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4항 제2호 나목 (1)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9.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6. 11. 1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인천공항공등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6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2007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인천공항공등학교 전보유예의 특례 경과조치)

제7조 제8항 제3호는 2007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7. 11. 1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인천산업정보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 제2호 가목은 2007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2008.3.1.자 인천신현고 초빙교사 요청과 인천국제고의 우선전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08. 11.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2.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2.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 지도 체육교사의 전보유예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7항 제1호의 단서 조항은 2009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9. 11. 1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가. (근무기간)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나.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 및 교육활동경력 평정점) 제6조 제3항 제2호 가,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 (기타(강화)지역전보) 제6조 제4항 제2호 나의 (1) 단서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라. (기타(강화)지역전보) 제6조 제4항 제2호 나의 (3), (4)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삭제: 2012.11.14.)

부 칙(2010. 11. 1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가. (근무기간)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2.28. 이전 기타인사군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보유예) 제7조 제7항 제18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2.28. 이전 강화고, 강화여자고에 전보된 자는 제7항 제13호의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 (초빙교원) 제7조 제9항 제2호 단서 조항은 2012.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라. (초빙교원) 제7조 제9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1.2.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삭제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1. 1. 13.)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15.)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제한 횟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의 단서는 2012.1.1.자 이후 선발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선발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제13조 제2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20.)
3.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 조치) 제14조 제1항 제2호는 2013.3.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1. 1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 우선전보 규정 삭제 경과조치) 제7조 제2항 제6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4.3.1.자 정기전보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나. (승진 후보자 3배수 내 여교원 우선임용 규정 삭제 경과조치)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2014.1.31.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부터 한다.
3.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 및 교육활동경력 평정점)
 - 가.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로 2013.2.28.자 이전에 전보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 제②항 제8호에 따른다. 단, 기타지역으로의 내신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나.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다.

부 칙(2013. 11.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 전공교과교사 중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는 1년씩 2회 유예 조항 개정 경과조치) 제7조 제7항 제8호는 2015.3.1.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4. 7. 1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7.)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천해밀학교 근무기간 및 전보의 유예 적용)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7조 제7항 제13호는 2015년 3월 1일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제7조 제9항 제1호 마목(일반학교 초빙비율)은 2016.3.1.자부터 적용하되, 2015.3.1.자는 15%이내를 적용한다.
4. (승진임용 경과조치) 제14조 제1항은 2017.1.31.자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7. 27.)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5.)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 25.)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2.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3. (승진임용 및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제2호는 교감 승진임용의 경우 처분일이 2018.3.1.이후의 징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7. 19.)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19. 8. 6.)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20. 1. 16.)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의 개정 기준 중, (교원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2020년 9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7. 24.)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단, 제6조 제4항 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일자 전보까지는 옹진군 중학교에 대한 인천광역시남부교육 지원청 소속 교사(2020.3.1. 이전 전입자)의 전보 희망과, 서도중학교에 대한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소속 교사(2020.3.1. 이전 전입자)의 전보희망을 우선하여 전보한다.

부 칙(2021. 7. 16.)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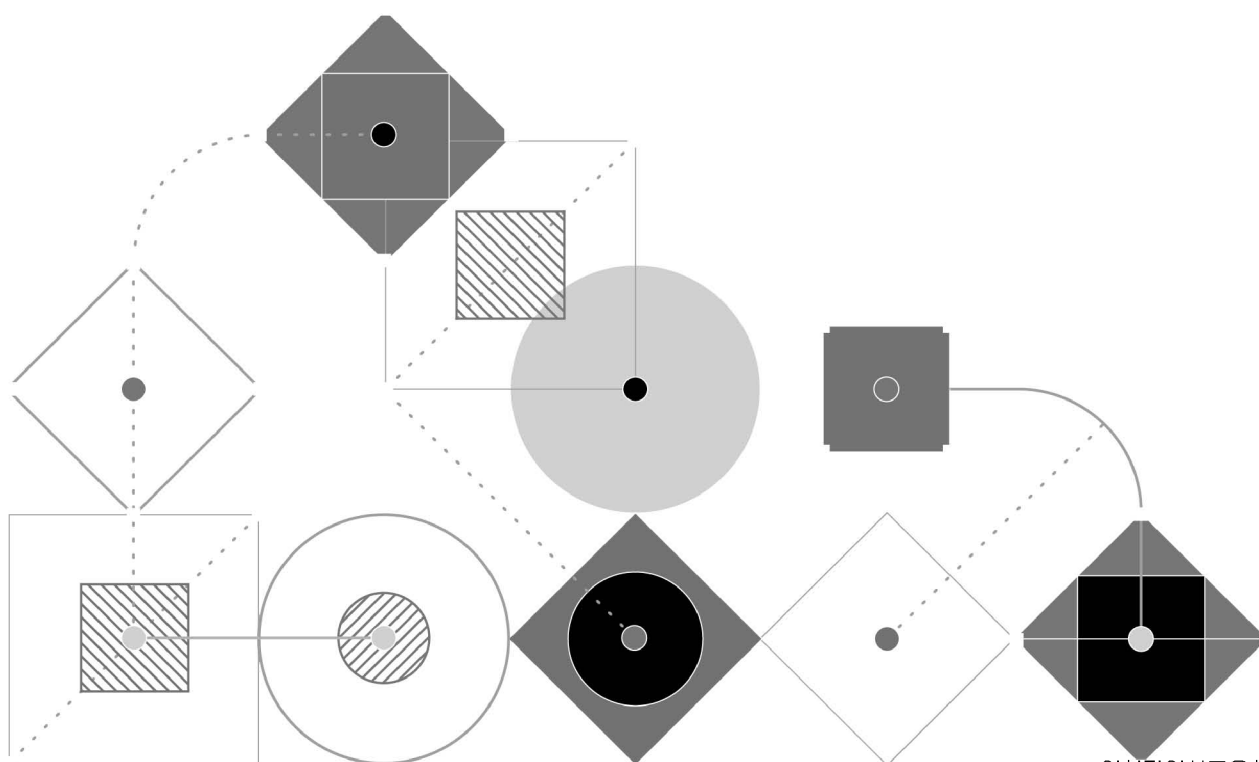
부 칙(2022. 7. 14.)

1.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근무기간 및 경력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2호와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은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7. 6.)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영양교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영양교사)

2007. 11. 16. 공포
 2008. 11. 21. 개정
 2009. 11. 19. 개정
 2010. 11. 18. 개정
 2011. 11. 15. 개정
 2013. 11. 20. 개정
 2014. 11. 17. 개정
 2015. 7. 27. 개정
 2016. 7. 25. 개정
 2017. 7. 18. 개정
 2018. 7. 19. 개정
 2019. 8. 6. 개정
 2020. 7. 24. 개정
 2021. 7. 16. 개정
 2022. 7. 14. 개정
 2022. 8. 31. 개정
2023. 7. 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 관계 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공립 영양교사에 적용하며, 교육장 소속 인사관리는 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해당 인사구역 내 실정에 맞게 시행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신규임용)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② 신규임용교사의 배정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되, 신규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감(교육장)이 임용한다.

③ 신규임용 교사 중 Ⅲ구역 희망자는 우선 임용한다. 다만,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제교사의 임용) 계약제교사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 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장 전보

제5조(전보계획) 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도서·벽지 순환근무를 위하여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조(인사구역) 교사의 근무 희망지 및 지리적 특성, 학교급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I 구역, II 구역, III 구역으로 인사구역을 설정한다.

제7조(동일 인사구역 내 근무연한) 동일 인사구역 내 근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정기전보일 현재 지역 근속기간 미달자는 다음 정기전보일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1. I 구역의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I 구역 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2. II 구역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하고, III 구역 근속기간은 2년으로 하되, 3월 1일자 정기전보 후 2개월 이내에 III 구역에 임용된 신규임용교사는 3월 1일자 임용으로 간주 처리한다.
다만, II·III 구역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설학교 설립사무 등으로 인한 근무연한) 개교 이전 신설학교 개교 설립사무를 위한 겸임 후 해당학교로 발령받은 자는 동일 인사구역 내 근속기간 중 2년을 한시적으로 III 구역 근속기간으로 간주한다.

제8조(정기전보) ①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근무 1년 이상 4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만기근속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학교급식관련 연구·정책추진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 ③ 교사의 순환전보는 동일 인사구역 내 근무 만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I 구역 근무 만기자는 II 구역과 III 구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II · III 구역으로의 전보는 전보 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2. II 구역 근무 만기자는 I · III 구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3. III 구역 근무 만기자는 I · II 구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만기근무자는 초 · 중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④ 고등학교 만기근무자가 고등학교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에 준하되, 동 기준 제6조제1항 인사군에 구애되지 않고 학교를 희망할 수 있다.
- ⑤ 교육지원청 내에서의 전보는 교육지원청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인사구역간 전보 순위명부) ① I 구역으로의 전보 순위명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III 구역 만기근무자
 - 가. 서해5도 초·중·고 통합학교 만기근무자
 - 나. 그 외 III 구역 만기근무자
 2. II 구역 만기근무자 중 장기근무자
 3. 동일 조건일 경우 호봉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
- ② II · III 구역으로의 전보 순위명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III 구역을 우선 전보한 후 II 구역으로 전보한다.
1. III 구역 전보순위
 - 가. III 구역 희망자

단, 동일 조건인 경우 III 구역 장기근무자, 호봉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
 - 나. 신규임용교사
 - 다. 타 시·도 전입 교사
 - 라. II · III 구역 미 근무자로 I 구역 만기근무자 중 장기근무자
 - 마. II 구역 근무 후 I 구역 만기근무자 중 장기근무자
 - 바. II 구역 장기근무자
 - 사. III 구역 근무 후 I 구역 만기근무자 중 장기근무자
 - 아. 2호 이후 동일 조건인 경우 호봉이 낮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순
 2. II 구역 전보순위
 - 가. II 구역 희망자

단, 동일 조건인 경우 III 구역 장기근무자, 호봉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
 - 나. 신규임용교사
 - 다. 타 시·도 전입 교사
 - 라. II · III 구역 미 근무자로 I 구역 만기근무자 중 장기근무자

- 마. II 구역 근무 후 I 구역 만기근무자 중 장기근무자
- 바. II 구역 장기근무자
- 사. III 구역 근무 후 I 구역 만기근무자 중 장기근무자
- 아. 2호 이후 동일 조건인 경우 호봉이 낮은 자, 생년월일이 늦은 자 순
- ③ 근무기간 계산은 월수까지 계상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상하지 않는다.
- ④ (2015.07.27., 삭제)

제10조(전보 순위명부의 유효기간) 전보 순위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정기전보일에 한한다. 다만, 학기 중 III구역 영양교사 정원 결원 보충 시에는 신규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정기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인사구역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6.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지시된 자
7. 부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자
8. 도서·벽지, 접적지구 근무자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
9. 교권침해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
10.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와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자
12.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제12조(전보의 특례)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정원 변동으로 인한 교원의 전보는 경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지원청간 전보) ①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1 구역 동일교 1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희망 교육지원청별로 작성한 순위명부에 의한다.
- ② 교육지원청간 전보 순위 명부 작성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근속연수 평정점은 월 0.1점으로 하고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무성적 평정점은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근무성적평정 최종 조정점의 10%를 점수로 환산한다.
 3. 교육총경력 평정점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호봉의 10%를 점수로 환산하고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근무기간 계산은 월수까지 계상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 ④ 전보 희망자 순위명부 작성에 있어 전보가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순으로 한다.
- ⑤ (2015.07.27., 삭제)
-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전보는 별도계획에 의한다.

- 제14조(전보의 우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만기전보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보에 우대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자
 2.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로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제4장 시·도간 교류

- 제15조(시·도간 교류) 교사의 시·도간 교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기준에 따른다.

- 제16조(국·공립간 교류) 국·공립간 교원 교류를 위한 추천자 명부 작성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7조(위임) 교육장이 인사관리세부기준을 수립할 때 본 기준에서 정한 인사구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일 인사구역 내 영양교사 정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07. 11.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경력) 2007. 3. 1부터 현재까지의 인사구역 근무경력은 제정된 인사구역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부칙 (200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정기전보) ③항의 전보유예에 관한 추가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1.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구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인사구역은 개정일 현재 고등학교(1일 1식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부터 적용한다. 단, II구역 근무기간은 개정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전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8. 7. 19.)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2019. 8. 6.)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2020. 7.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 인사구역 내 근무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호의 개정된 동일 인사구역 내 근무연한은 2021년 3월 1일 이후 III구역에 임용된 신규영양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설학교 설립사무 등으로 인한 근무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된 신설학교 설립사무 등으로 인한 근무연한은 2021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개교 설립사무를 위한 점입 후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영양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7. 16.)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인사구역 중 불은초, 합일초, 조산초의 II구역 인정은 2022.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전보 적용기간) 제13조6항은 2024년 3월 1일 정기인사부터 2025년 3월 1일 정기인사까지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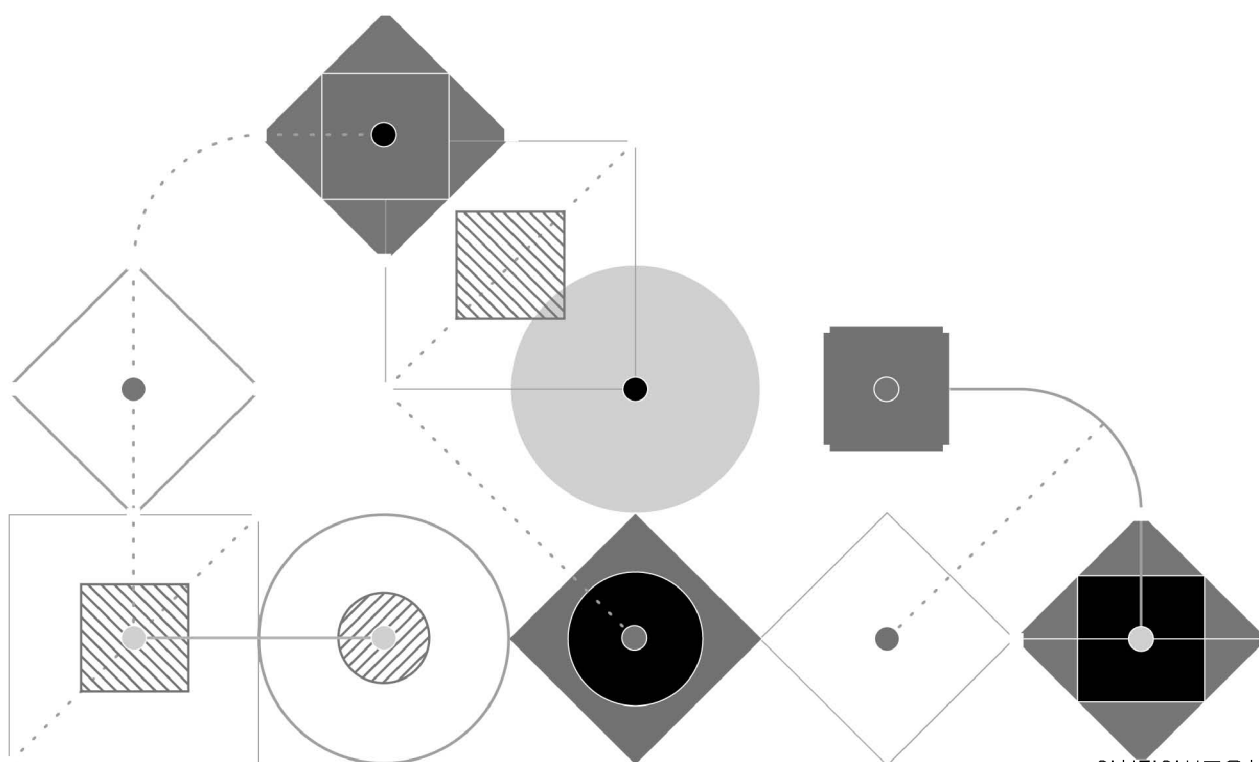
제3조(인사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인사구역 중 양사초의 II구역 인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 사 구 역

(별표 1)

구 역	유·초·중등		특수	근무 년한
I 구역	-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영종·용유지역 및 옹진군 관내 학교 제외) -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u>단설유치원</u>	-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영종·용유지역 및 옹진군 관내 학교 제외) -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4년
II 구역	-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영종·용유지역 초등학교 -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강화초, 갑룡초, 길상초, 화도초, 송해초, 내가초, 선원초, 대월초, 하점초(명신초, 강서중), 불은초, 합일초, 조산초, <u>양사초</u>	-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영종·용유지역, 영흥면 소재 중·고등학교(1일 2식 이상교 제외) - 강화군 관내 중·고등학교(교동, 주문도 지역 제외) - 고등학교(1일 1식교)	특수 학교	3년
III 구역	- 남부교육지원청 옹진군 관내 초등학교 -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삼산초, 해명초, 교동초	- 남부교육지원청 옹진군 관내 중·고등학교 (I, II 구역 중·고등학교 제외) - 강화군 관내 중·고등학교 (I, II 구역 제외) - 고등학교(1일 2식 ~ 3식교) - 인천한누리학교(1일 3식교)		2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사·도간 교류 기준



교육공무원 사·도간 교류 기준

1998.11. 9 개정 2015. 7.27. 개정
1998.12.30 개정 2019. 8. 6. 개정
2000. 4.20 개정 2022. 7.14. 개정
2001.11.28 개정
2002.10.21 개정
2005.11.17 개정
2006.11.17 개정
2007.11.16 개정
2008.11.17 개정
2009.11.19 개정
2011.11.15 개정
2013.11.20 개정
2014.11.17 개정

I. 사·도간 교류

1. 타시·도 전출

가.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서 1년(365일)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타시·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

나. 원칙

- 1)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기준 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 2) 시·도 교육청간에 직급별 과목별로 전출·입 희망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로 교류한다.
- 3) 교장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나 동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는 동일 조건으로 1:1 동수 교류를 할 수 있다.
- 4) 교원 수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공업계 전문교과(전기, 전자, 통신, 기계, 금속 등)는 각각 통합교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 5) 교류 희망자의 고충해소 및 근무 여건 개선과 교원 수급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수급의 적정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 교육청과의 합의에 의해 일방 전출입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전출기준

1) 일반기준

가) 1순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1대에 한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름, 이하 같음)이고 전출할 시·도내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고 전출 희망 시·도내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개정: 2015.7.27., 2019.8.6.)

나) 2순위: 부부간 별거자(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 내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 또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에 재직 중인 자)

다) 3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자(단, 부모가 전출 희망 시·도 내 주민등록상에 5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된 경우)

라) 4순위: 1, 2, 3 순위를 제외한 일반 희망자

마) 위 전출 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중 인사교류 희망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8.6.)

2) 전출 우선 순

상기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순에 의한다.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되는 자

나) 3자녀 이상을 둔 자(단, 3자녀 중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일 경우)

다) 부부간 별거 기간이 긴 자

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자(단, 부모가 전출 희망 시·도 내 주민등록상에 5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된 경우)

마) 부부교원(교육전문직 포함)(단,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 내에 재직 중이거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

- 바) 부부공무원(단, 배우자가 전출 희망 사·도 내에 재직 중이거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
- 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근무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아)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라. 전출 배제기준(전출일 기준)

-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2) 파견, 휴직 등 전출일 이전에 복직 또는 복귀가 불가능한 자
- 3) 휴직, 파견, 특별연수 등으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신설: 2022.7.14.)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한다.

2. 타시·도 전입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의 전입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 전출기준에 의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단, 1:1 교류는 제외)
- 나. 수사개시 통보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개정: 2022.7.14.)
- 다. 장기파견근무 중인 자
- 라. 휴직 중인 자 또는 장기휴직 예정인 자
- 마. 임용 직렬이 서로 다른 자
- 바.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015.5.20.건부터 적용하되, 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일 기준)(신설: 2019.8.6.)
- 사. 징계처분 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또는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신설: 2022.7.14.)

II. 교환 근무

1.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서 1년(365일)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관내 국·사립학교, 타시·도 교육청으로 교환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

2. 원칙

가. 범위: 우리 교육청 관내 국·공·사립학교간, 또는 타시·도 교육청간 교환 근무

나. 파견 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위, 직급, 과목별, 희망인원 등 상호교류 조건이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1:1 동수로 파견에 의한 교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 및 국·사립 임용권자간 협의에 의거 일방 파견도 가능

다. 파견 기간은 2년이며, 추후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개정: 2019.8.6.)

라. 교환 근무 희망은 시·도간 교류와 중복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9.8.6.)

3. 교환(파견) 근무 기준

가. 시·도간 교환(파견) 근무

1) 우선순위

가) 1순위: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특별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타시·도 교환 근무자로 지정된 자

나) 2순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1대에 한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고 교환(파견) 근무희망 시·도내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고 교환(파견) 근무희망 시·도내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개정: 2015.7.27., 2019.8.6.)

다) 3순위: 부부간 별거자(교환 근무 희망 시·도 내에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 또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에 재직 중인 자)

라) 4순위: 본인·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자(단, 부모가 교환 근무 희망 시·도 내 주민등록상에 5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된 경우)

마) 5순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되는 자

바) 6순위 : 기타 일반 희망자

2) 상기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함

가) 본시 근무 교육경력이 많은 자

나)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다) 생년월일이 빠른 자

나. 국·사립간 교환(파견) 근무

1) 국립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과의 교환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신청

2) 국립 또는 사립학교 상호간이나, 국·사립학교 간 교환근무는 당해 임용권자가 상호 합의하여 직접 파견에 의해 교환 근무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3) 교환 근무 대상자는 공·사립의 경우 임용권자가, 국립의 경우 학교장이 선정

4. 기타 사항

가. 파견 기간 만료 후 복귀 시에는 파견당시 근무처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견 당시 근무지와 동일 교육지원청 동일 급지에 우선 배치 한다.

다. 특별연구과제 부여 시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한다.

마. 교환 근무자는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 또는 국·공립교류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의하여 전입 또는 파견 발령된 자는 임지 지정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2002. 1. 1 이후 타 시·도 전입자는 도서·벽지 급지별 기본점 즉, ‘가’ 급지는 A지역 (월0.019), ‘나’ 급지는 B지역(월0.018), ‘다’ 급지는 C지역(월0.017), ‘라’ 급지는 D지역 (월0.016)의 기본점을 부여한다.

- ④ 1년 간의 전출 내신 횟수는 2회(전반기 및 후반기)로 하되, 전반기에 전출 내신을 한 자는 별도의 내신 없이 후반기에도 전출 내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매 학년도의 후반기(9.1자) 전출은 전반기(3.1자) 전출 순위 명부에 의하되, 후반기에 추가 전출 내신을 한 자의 순위는 전반기 최하위 전출 순위자의 다음 순으로 한다.
- ⑥ 단, 2000. 9. 1.자 전출 희망자에 한하여는, 2000. 3. 1.자 전출 내신에 관계 없이 전원 전출 내신을 하도록 하며, 이에 의한 전출 순위 명부를 작성·활용한다.

부 칙(2002. 10. 21.)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3.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11. 17.)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6.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1. 17.)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1. 16.)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1. 17.)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시·도간 교원 교류는 매 학년도 전반기에 1회 실시한다.

부 칙 (2009. 11. 19.)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5.)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3. 1.자 인사발령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0.)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7.)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7.)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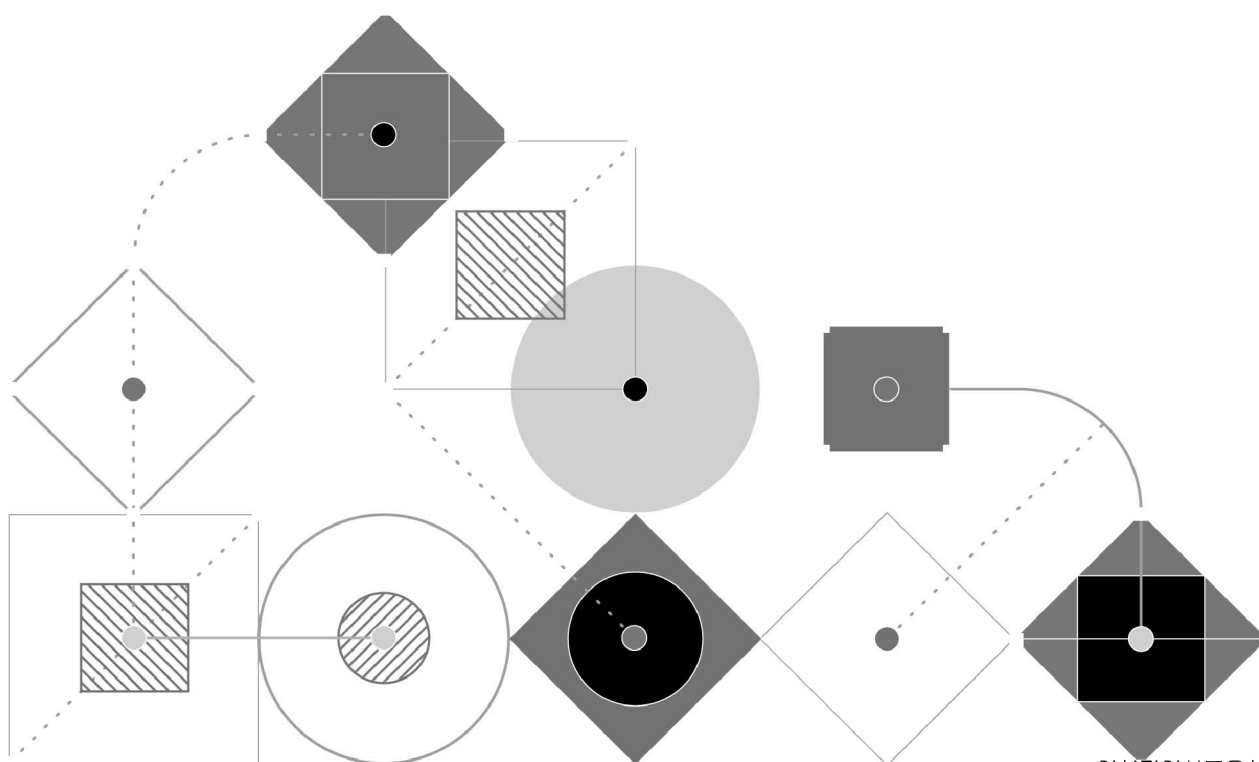
부 칙(2019. 8. 6.)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4.)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임용후보자 전형기준

1990. 12. 06 공포	2006. 05. 18 개정
1991. 12. 21 개정	2006. 11. 17 개정
1993. 10. 25 개정	2007. 04. 26 개정
1994. 11. 10 개정	2008. 04. 18 개정
1996. 01. 08 개정	2008. 11. 21 개정
1998. 02. 03 개정	2009. 12. 03 개정
1999. 03. 16 개정	2012. 01. 10 개정
2001. 01. 16 개정	2013. 11. 20 개정
2001. 08. 04 개정	2015. 05. 29 개정
2001. 11. 28 개정	2017. 07. 18 개정
2002. 10. 21 개정	2018. 11. 28 개정
2003. 11. 13 개정	2020. 11. 09 개정
2003. 12. 31 개정	2021. 10. 26 개정
2004. 11. 30 개정	2023. 07.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전형기준, 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예정직 및 예정인원)

- ① 임용예정직은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한다.
- ② 임용예정인원은 소요인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기준)

- ① 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에 의해 산출한 '가경력'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등에서 실제 근무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15년 이상(단, 임기제인 경우에는 12년 이상)이고, 인천광역시 소재 동등급 학교에서 실제 근무한 교육경력(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포함)이 8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중등의 경우 응시과목 중등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고, 전과한 자는 전과한 과목으로 응시하되, 전과한 과목 중등1급 정교사 자격이 없을시 전과하기 전의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다)

1. 보직교사(보건, 전문상담, 사서, 영양교사 제외) 경력 3년 이상인 자
단, 유치원교사, 특수교사는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교육연구(연수)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위 1, 2, 3호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② 교(원)감은 교(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교(원)장은 제외한다.
- ④ 정책분야에 근무하여야 할 교육전문직원과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의 추천기준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발 전형 공고 시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추천방법)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자유유치원은 교(원)장이, 기관배정 교사는 소속기관장이, 유·초·중학교는 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소속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가 최초 전직임용을 위한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추천없이도 응시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되었으나 사면이나 말소가 되지 않은 자
2. 징계처분을 받고 사면이나 말소가 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4. 수석교사 및 연수과전 중에 있는 자
5. 초빙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학습연구년제 과전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7. 공고일 현재 휴직 중인 자
8. 공고일 현재 복수(부전공 포함) 자격연수 중인 자 또는 대상자로 지명된 자
9. 제8호 관련 연수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연수 종료일 기준)

제5조(전형구분)

- ① (2006.05.18. 삭제)
- ② 시험전형은 서류전형, 1차전형(기본소양평가, 현장평가)과 2차전형(역량평가)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며, 2차전형은 현장평가 70%이상 득점자 중 서류전형과 1차전형 결과 상위자 순으로 다음표에 따라 2차 전형 대상 인원수를 결정한다. (단, 동점자는 모두 2차 전형 응시대상에 포함)

모집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2차전형 응시인원	3명	5명	7명	9명	2배수

- ③ 정책분야에 근무하여야 할 교육전문직원과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은 별도 기준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전형) 서류전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평정하며, 평정은 초·중등인사담당장학관이, 확인은 초·중등교육과장이 한다.

- ① (2015.05.29. 삭제)
- ②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에 의거 평정(단, 교감은 교사 직위에서 취득한 실적 포함)하고, 평정점은 같은 규정 제37조제2항에 준하여 평정하되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학위취득실적평정은 석사학위는 1점, 박사학위는 1.5점으로 평정(단, 교감은 교사 직위에서 취득한 실적 포함)하고,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과 제3항을 합하여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파견(겸임)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 근무경력평정은 교육감소속기관, 교원양성기관에 파견(겸임)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에 0.5점(1년 미만은 1월마다 0.0416점)으로 평정하며, 3.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연수 목적의 파견은 제외한다.

제7조(1차전형)

- ① 1차전형은 교육전문직원에게 요구되는 교육행정, 장학, 교육일반 및 교양 등에 관한 전문직 소양능력을 포함한 서술형·논술형 평가와 현장평가로 한다.
- ② 서술형·논술형평가 점수는 교육감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채점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 ③ (2015.05.29. 삭제)
- ④ 현장평가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인성적 자질, 학생지도력, 교육활동실적 등을 평가한다.

제8조(2차전형)

- ① 2차전형은 심층면접,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로 하며, 영역별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 ② 심층면접은 교직원일반에 관한 소양(교육상식), 교육자로서의 자질(의사소통능력, 예절),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행정가로서의 자질 및 관리능력에 관하여 평가한다.
- ③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장학업무 지원 및 수행능력, 교과전문성 및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역량 등을 평가 한다.

제9조(전형배점) 전형배점은 다음과 같다.

전형구분	전형방법	전형 영역	배 점		비 율
서류전형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1.5	1.5 (상한점)	5%
		학위취득실적평정	1.5		
		과견(겸임)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 근무경력평정	3.5		
		소계	5		
1차	현장평가	현장평가	30		50%
		소계	30		
	기본소양 평가	서술형·논술형평가	20		
		소계	20		
2차	역량평가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25		45%
		심층면접	20		
		소계	45		
총 계			100		100%

제10조(동점자 처리) 임용후보자 전형에 있어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2차 역량평가전형 평정이 우수한 자
2. (2013.11.20.삭제)
3. 2차 역량평가 중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평정이 우수한자
4. (삭제)

5. (2015.05.29. 삭제)

6. 교육경력이 많은 자

제11조(합격자 결정)

- ① 전형구분별 또는 모집단위별(교과별 중등, 계열별 중등) 합격자는 전형구분별 또는 모집단위별(교과별 중등, 계열별 중등) 총점 선순위자 중 2배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정책분야의 임용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서 따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단, 2차 전형 총점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2조(순위명부 작성)

- ① 합격자의 순위명부는 전형구분별로 총점 순위 및 전형구분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중등의 경우는 교과별로 작성하며, 정책분야의 임용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명부를 작성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단,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이 속한 학기말 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임용)

- ① 임용은 제12조(순위명부 작성)에 의거 전형구분별 또는 모집단위별(교과별 중등, 계열별 중등)로 하되, 임용인원은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 ② 임기제로 임용된 교육전문직원은 지정된 임기기간을 복무한 후 임용 전 직위로 전직하여야 하며, 임용 중 상위자격취득이 불가하다.

제14조(기타) 본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01. 11. 28.)

1. 이 기준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조(추천기준)에서 「우리교육청 시행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평가 합격자 또는 평가 면제자」 기준은 2004년도부터 적용한다.
3. 제7조(필기시험)는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2003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논술 평가와 장학능력평가로 하되 평가방법은 달리한다.

부 칙(2003. 11. 13.)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6조(서류전형) 및 제9조(전형배점)의 파견교원경력평정은 2004년 12월 1일 이후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05. 18.)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조, 제6조, 제9조는 2007년도부터 적용하되 2006년도 선발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6. 11. 17.)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4.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4. 18.)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서류전형) 각항은 2008년도 선발에는 종전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66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8. 11.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조 ①항 1호의 및 제8조 ③항 1호 중 외국어활용능력 검증은 2010년도 선발시부터 적용하며,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9. 12. 03.)

1. 제8조 ③항 1호 중 외국어활용능력 검증은 외국어교과 교사에 한하여 적용함

부 칙(2012. 01.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④항은 2012년은 1.5+1(과건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경력 2년), 2013년은 1+1.5(과건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경력 3년), 2014년은 0.5+2(과건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경력 4년)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해설】

제6조 ④항은 2012년은 기본점수1.5점+평정점1점(과건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경력 2년), 2013년은 기본점수1점+평정점1.5점(과건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경력 3년), 2014년은 기본점수0.5점+평정점2점(과건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경력 4년), 2015년 이후 평정점2.5점(과건이나 기관배정 또는 보직교사경력 5년)으로 연차적 시행하는 내용임

부 칙(2013. 11.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5.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의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2.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에 3회 이상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는 4회 응시부터 감점제를 적용하되, 2016년 전문직 선발 전형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7. 07. 18.)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4조 제5호 및 제6호의 추천제외사유는 2020년 3월 1일자 초빙교사 또는 학습연구년 파견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1. 09.)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4조 제8호와 제9호의 추천제외사유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자격연수지명자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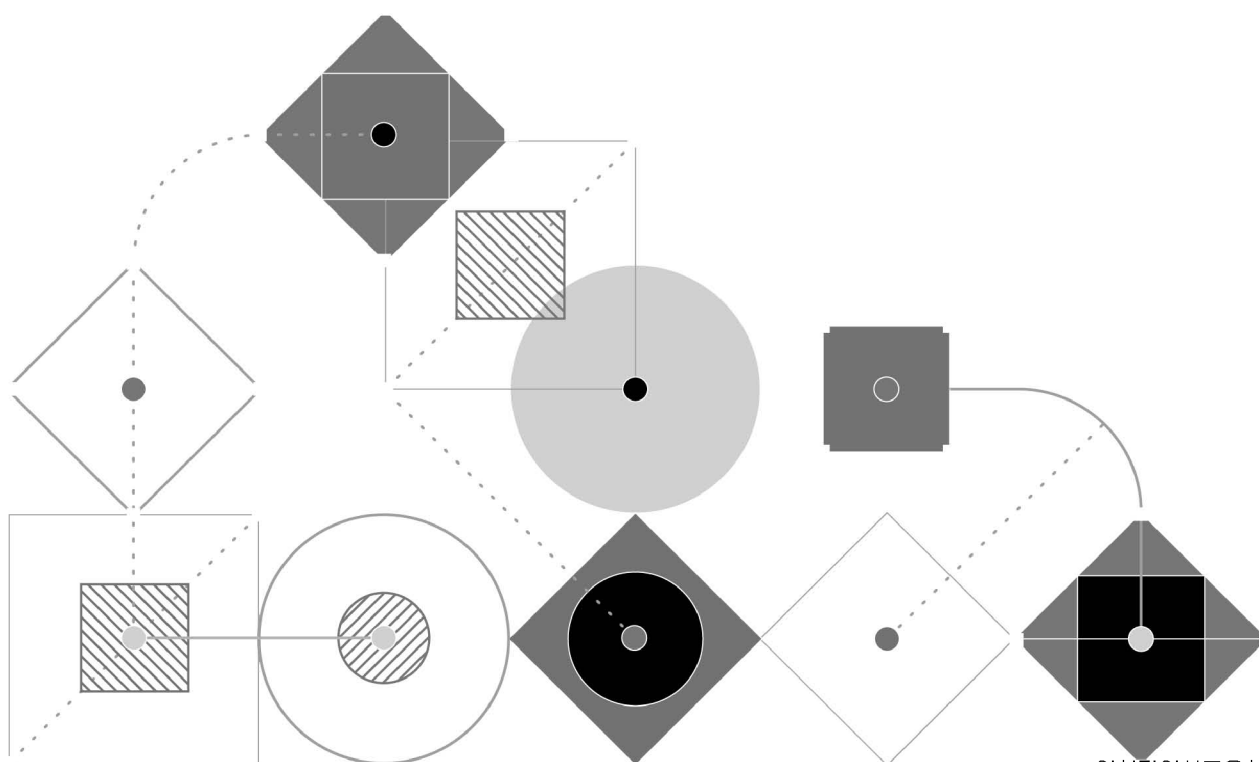
부 칙(2021. 10.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11.)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중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중등)

2001. 11. 23.	제정	2010. 8. 25.	개정
2001. 12. 24.	개정	2011. 7. 19.	개정
2002. 10. 21.	개정	2011. 11. 15.	개정
2003. 11. 13.	개정	2012. 11. 14.	개정
2004. 2. 14.	개정	2013. 8. 21.	개정
2004. 11. 8.	개정	2015. 7. 29.	개정
2004. 12. 30.	개정	2016. 7. 23.	개정
2005. 4. 19.	개정	2017. 7. 18.	개정
2005. 8. 8.	개정	2018. 7. 19.	개정
2006. 2. 28.	개정	2018. 7. 30.	개정
2006. 11. 17.	개정	2019. 8. 6.	개정
2007. 1. 19.	개정	2020. 7. 24.	개정
2007. 11. 16.	개정	2020. 11. 9.	개정
2007. 12. 24.	개정	2021. 7. 16.	개정
2008. 6. 19.	개정	2022. 7. 14.	개정
2008. 11. 21.	개정	2023. 7. 11.	개정
2009. 11. 19.	개정	2023. 8. 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시행 2023.6.13.)(대통령령 제33528호, 2023.6.13., 일부개정)제41조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는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승진임용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관내 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중등 교장,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중등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3. 제1호 내지 2호 외의 중등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수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초등)을 적용한다.

- 제3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의 기준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에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②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 ③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이며, 학년도별 상한점은 0.08점으로 하고 총합계는 1.0점으로 한다.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연간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5조(선택가산점) ①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참조)

②『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학교교육유공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2.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월평정점을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2.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타시도 전입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한 지역급지별 기본점만 부여한다. 이 경우 가급지는 A, 나급지는 B, 다급지는 C, 라급지는 D지역의 기본점을 부여한다.

지역	중등		교육 행정기관	월평정점			비고
	도서	접적		기본점	부가점	계	
A		연평중·고 백령중·고 대청중·고		0.019	0.037	0.056	
B	덕적중·고	교동중·고 서도중·고	인천난정평화교육원	0.018	0.028	0.046	
C	영흥중 인천영흥고	강서중	서사체험학습장	0.017	0.019	0.036	
D			강화교육지원청	0.016	0.010	0.026	
E		강화중 강화고 강화여중 강화여고	국화리 학생야영장	0.015	0.005	0.020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교육감이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2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7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역	중등	교육행정기관	일 평정점	월 평정점	항목 상한점
A	용유중,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홍왕체험학습장 해양환경체험학습장	0.00067	0.02	1.0
B	인천공항중, 영종중 인천중산중, 인천공항고 인천영종고 영종국제물류고 인천하늘중 인천중산고 <u>인천운서중</u>	인천교육과학정보원 인천교육연수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0.00050	0.015	
C	화도진중, 청천중 함박중, 백석중 인천석남중, 신현중 인천소방고 인천체고		0.00033	0.01	

※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학교는 교육 여건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4.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월 0.02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3점)의 평정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삭제: 2021.7.16)

나. (삭제: 2021.7.16)

다. (삭제: 2021.7.16)

라. (삭제: 2021.7.16)

마. (삭제: 2021.7.16)

③ 『보직교사·전문직 근무경력』 가산점은 '보직교사 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평정기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비고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2급)	전 기간	0.00070	0.021	1.75	
보건교사(1급)	2014.1.1.이후				
정교사(2급) 영양·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2023.3.1.이후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특수교육대상자,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및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은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보직교사 근무경력' 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019.2.28. 이전 취득한 가산점까지 인정한다.

항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비고
통합 학급 담임	0.00018	0.0053	1.0	통합학급담임경력은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학생을 담임하는 교사에 해당되며, 교과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2.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 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0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17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0.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평정기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비고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2급) 보건교사(1급)	2019.3.1.이후	0.00017	0.005	0.3	
정교사(2급) 영양·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2023.3.1.이후				

⑤『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가산점은 '교육감지정 연구·정책추진학교 근무경력', '교육실습 대응·협력학교 근무경력',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도서·벽지 교육진흥 유공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정책추진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33점). 이 경우 항목 상한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가. 일반 교육실습 가산점

구분	평정기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비고
중등	2005.3.1. 이후	2주이상 6주미만 : 0.01점 6주이상 8주이하 : 0.02점		1.25	
보건	2005.3.1. 이후				

나. 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육실습 가산점(신설: 2023.7.11.)

구분	월평정점	학기당 상한점	항목 상한점	비고
중등	0.01	0.03	1.25	

3.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수업연구 발표대회’ 입상실적을 다음 표에 의거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구 실적으로 평정된 입상 실적은 가산점에 중복하여 평정할 수 없다. 단, 2020.2.29. 이전 취득한 가산점까지 인정한다.

입상 실적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평정점	0.15	0.10	0.05	

⑤『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가산점은 ‘교육감지정 연구·정책추진학교 근무경력’,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근무경력’,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도서·벽지 교육진흥 유공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 : 2025.4.1.]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정책추진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33점). 이 경우 항목 상한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가. 일반 교육실습 가산점

구분	평정기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비고
중등	2005.3.1. 이후	2주이상 6주미만 : 0.01점 6주이상 8주이하 : 0.02점		1.00	
보건	2005.3.1. 이후				

나. 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육실습 가산점 (신설: 2023.7.11.)

구분	월평정점	학기당 상한점	항목 상한점	비고
중등	0.01	0.03	1.00	

3.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수업연구 발표대회’ 입상실적을 다음 표에 의거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구실적으로 평정된 입상 실적은 가산점에 중복하여 평정할 수 없다. 단, 2020.2.29.이전 취득한 가산점까지 인정한다.

입상 실적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평정점	0.15	0.10	0.05	

4. 도서·벽지 교육진흥 유공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0.3점을 초과할 수 없다.(단,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가. 구역 구분은 제5조제2항제1호의 도서·벽지 구역을 적용한다.

지역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비고
도서 벽지	A	0.00017	0.0050	0.3	· 2026.3.1.자 순위명부부터 적용하되, 적용 시 2022.3.1. 이후의 유공경력부터 가산점 취득실적을 인정하여 적용함.
	B	0.00014	0.0040		
	C	0.00011	0.0030		

- ⑥『국가기술 자격증 소지』가산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전문교과 담당교원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소지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 교원(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 교원에 대한 가산점은 담당과목, 근무교의 계열 및 학교급에 관계없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교원 모두에게 부여하되, 문서실무사의 경우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만료일인 2019. 6. 21. 이전 자격 취득자에 한함)

등급	대 상	평정점	항목 상한점	비고
A	해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기사1급), 산업기사(기사2급, 기능사1급), 서비스계 기술종목1단 또는 1급, 정보관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문서실무사1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1~3급	0.5	0.5	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B	기능사2급, 서비스계 기술종목2~3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2~3급, 문서실무사2~3급, 향해사·기관사 4~6급, 운항사4~5급, 소형선박조정사	0.25		

⑦『인천교육 공헌실적』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 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연평정점	항목 상한점	특 기 사 항
청소년봉사단 지도교사			0.06	0.5	청소년단체는 2004.3.1.이후부터 적용 동아리봉사단은 2016.3.1.이후부터 적용
수업개선 선도교사	0.00017	0.005	0.06	0.5	
중심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06	0.5	2009.3.1. 이후부터 적용
자율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06	0.5	2016.3.1. 이후부터 적용
담임교사 경력		0.003	0.036	0.3	2016.3.1. 이후부터 적용 월 평정점은 2008. 이후 실적부터 적용
원어민대체교사	0.00017	0.005	0.06	0.5	2011.2.28. 사업 종료
영재교육 담당교사	0.00017	0.005	0.06	0.5	2006.3.1.~2016.2.29.까지 적용 2016.3.1.이후 가산점 폐지
사이버학습배정형담임교사	0.00017	0.005	0.06	0.5	2009.3.1.~2016.2.29.까지 적용 2016.3.1.이후 가산점 폐지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0.00017	0.005	0.06	0.5	
장학지원단	0.00017	0.005	0.06	0.5	
인천정책자문위원	0.00017	0.005	0.06	0.5	
인천교원정책추진지원단	0.00017	0.005	0.06	0.5	2011.3.1.~2016.2.29.까지 적용 2016.3.1.이후 가산점 폐지

- ⑧ 평정기간의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중복 경력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 중복 경력 처리 기준 〉

구분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경력 중복시 처리 방법
그룹내	동일한 평정 기간 중 평정사유 2개 이상 중복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
	청소년단체 지도경력	영재교육 지도경력	2008.12.31. 이전 경력은 중복 인정, 이후부터는 택일
	도서·벽지 경력	학교교육 유공경력	2015.3.1.~2017.2.28.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학교교육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농어촌 경력	학교교육 유공경력	
그룹간	연구학교경력 (공통가산점)	연구·정책추진학교경력 (선택가산점)	택일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근무경력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도서·벽지 교육진흥 유공	
	보직(주임)교사 경력 (제5조제3항)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보직(주임)교사 경력 (제5조제3항)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통합학급 담임교사)	택일 (2002.1.1.이후부터 적용)
	보직(주임)교사 경력 (제5조제3항)	담임교사 경력	택일
	보직(주임)교사 경력 (제5조제4항)	담임교사 경력	택일
	보직(주임)교사 경력 (제5조제4항)	보직(주임)교사 경력 (제5조제3항)	택일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통합학급 담임교사)	담임교사 경력	택일
	장학사·교육연구사경력	도서·벽지경력(학교, 기관)	택일
	도서·벽지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도서·벽지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농어촌 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농어촌 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학교교육 유공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2015.3.1.이후부터 적용)

제4장 시행세칙 등

제6조(시행 세부 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08. 6.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에는,

- ①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한하여 '도서·벽지경력' 항목 상한점과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그룹 상한점은 3.5점까지 인정한다.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대하여는
동 그룹의 각 항목 상한점은 그대로 적용하되, 그룹 상한점에 한하여 3.5점까지 인정
한다.
-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
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2.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5조제④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에는,

-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의 '특수아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은 1.25
점까지 인정한다.
- ② 2006년 10월 31일 이전의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
은 1.25점까지 인정한다.
-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
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
정하지 아니한다.

부칙(200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②항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11.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②항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7. 19.)

제1조(시행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3장제5조(선택가산점) 제②항의 변경되는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제②항제4호의 나목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2013.3.1.자 이후 과학고 운영교사로 하며, 일반고 운영교사는 제5조제②항제4호의 다목을 적용한다.

부칙(2013. 8.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①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나 그룹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인천하늘초등학교와 공항유치원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는 A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5조제⑧항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도서·벽지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 ‘농어촌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의 중복인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 ② ‘학교교육유공경력’과 ‘특수교육대상자지도경력’의 중복 경력 택일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7.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제3호의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② 인천검암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자로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 C구역 학교인 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개원됨에 따라 개교일로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 C구역을 적용한다.

③ 인천백석초등학교는 2015년 9월 1일자로 서구 당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개교일을 기준으로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가산점 대상학교 지정을 해제한다.

부칙(2016. 7.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31일자 순위명부 작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4호의 나목 개정에 따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가산점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7.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인천서화초등학교의 가산점은 2018.3.1. 전입교사에 한하여 2021.2.28.까지 C구역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칙(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7항 개정에 따른 ‘담임교사 경력 가산점’의 월 평정점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7.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⑤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 조정 시 공통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4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부 조정 시 선택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4조에 따라 202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5조제⑤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11.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22일부터 개정고시일인 2020년 11월 9일까지 취득한 문서실무사 자격은 2021년 3월 31자 명부 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까지 인정한다.

제3조(명부 조정 시 선택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4조에 따라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5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 7.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제②항제3호에 관한 경과조치)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3.1.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5조제⑤항제4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도서·벽지 교육진흥 유공경력은 2026년 3월 31일자 순위명부부터 반영한다.(단, 반영 시에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유공경력 가산점 실적을 인정하여 적용한다.)

부칙(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

그룹명	항 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그룹 상한점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도시·벽지 경력	A지역 0.00187 B지역 0.00153 C지역 0.00120 D지역 0.00087 E지역 0.00067	A지역 0.056 B지역 0.046 C지역 0.036 D지역 0.026 E지역 0.020	2.0	2.75
	농어촌 경력	0.00067	0.020	1.5	
	특수지역 교육활동 경력	A구역 0.00067 B구역 0.00050 C구역 0.00033	A구역 0.0200 B구역 0.0150 C구역 0.0100	1.0	
	학교교육 유공경력	0.00073	0.022	2.0	
보직교사· 전문직 근무 경력	보직교사 경력	0.00070	0.021	1.75	1.75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	0.00070	0.021	1.25	
특수교육대상자,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및 보직교사 근무경력	특수교육대상자,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특수학교 0.00070 특수학급 0.00035 통합학급 0.00018	특수학교 0.0210 특수학급 0.0105 통합학급 0.0053	1.0	1.0
	보직교사 근무경력	0.00017	0.005	0.3	
교육감인정 연구경력	교육감지정 연구· 정책추진학교	0.00033	0.01	1.25 ¹⁾	1.25 ¹⁾
	교육 실습 대용 협력 학교 근무 경력	일반 교육실습 가산점	중등,보건	중등,보건	
			2~6주 0.00033	2~6주 0.01	
			6~8주 0.00067	6~8주 0.02	
		실습학기제 교육실습 가산점	월평정점	학기당 상한점	
			0.01	0.03	
	교실수업개선 연구 경력	1등급 : 0.15, 2등급 : 0.10, 3등급 : 0.05		1.25 ¹⁾	
	도시·벽지 교육진흥 유공경력	A지역 0.00017 B지역 0.00014 C지역 0.00011	A지역 0.0050 B지역 0.0040 C지역 0.0030	0.3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A등급 : 0.5, B등급 : 0.25		0.5	0.5
인천교육 공헌실적	수업개선 선도교사	0.00017	0.005	0.5	1.0
	청소년봉사단 지도교사	연평정점 0.06		0.5	
	중심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5	
	자율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5	
	담임교사 경력	—	0.003	0.3	
선택가산점 총합계					8.25

※ 『도시·벽지 경력』 항목상한점은 2015.2.28까지는 2.0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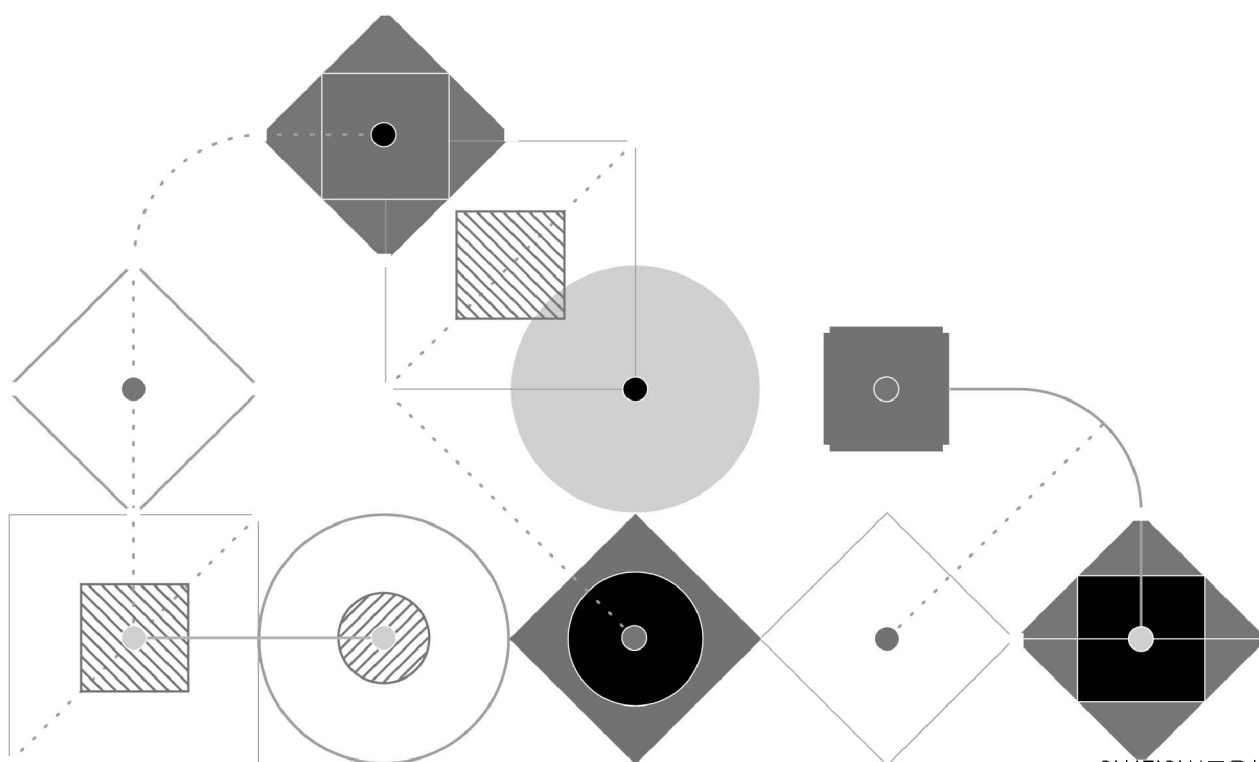
※ 『농·어촌 경력』 가산점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 항목 상한점까지만 인정한다.(2002.1.1~2011.2.28까지는 1.0점, 2011.3.1~2015.2.28까지는 1.2점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도시·벽지 경력』 및 『농·어촌 경력』 과 『학교교육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은 2015.3.1.~2017.2.2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도시·벽지 교육진흥 유공경력』 은 2026.3.31.자 순위명부부터 반영하되, 2022.3.1. 이후 유공경력부터 가산점 취득 실적으로 인정하여 적용한다.

¹⁾ 2025.4.1.이후 『교육감인정 연구경력』 가산점 그룹상한점과 항목 상한점은 1.0까지만 인정한다.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기준



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기준

2017.7.18. 전부개정

2023. 7.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경쟁**채용) ① 추천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전형방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에 따른다.

제3조(교사 **경력경쟁**채용) ①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실시 여부 및 규모를 정하여 실시한다.
②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을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교감 이상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동 연수에 지명된 자는 배제한다.

제4조(기타) 본 기준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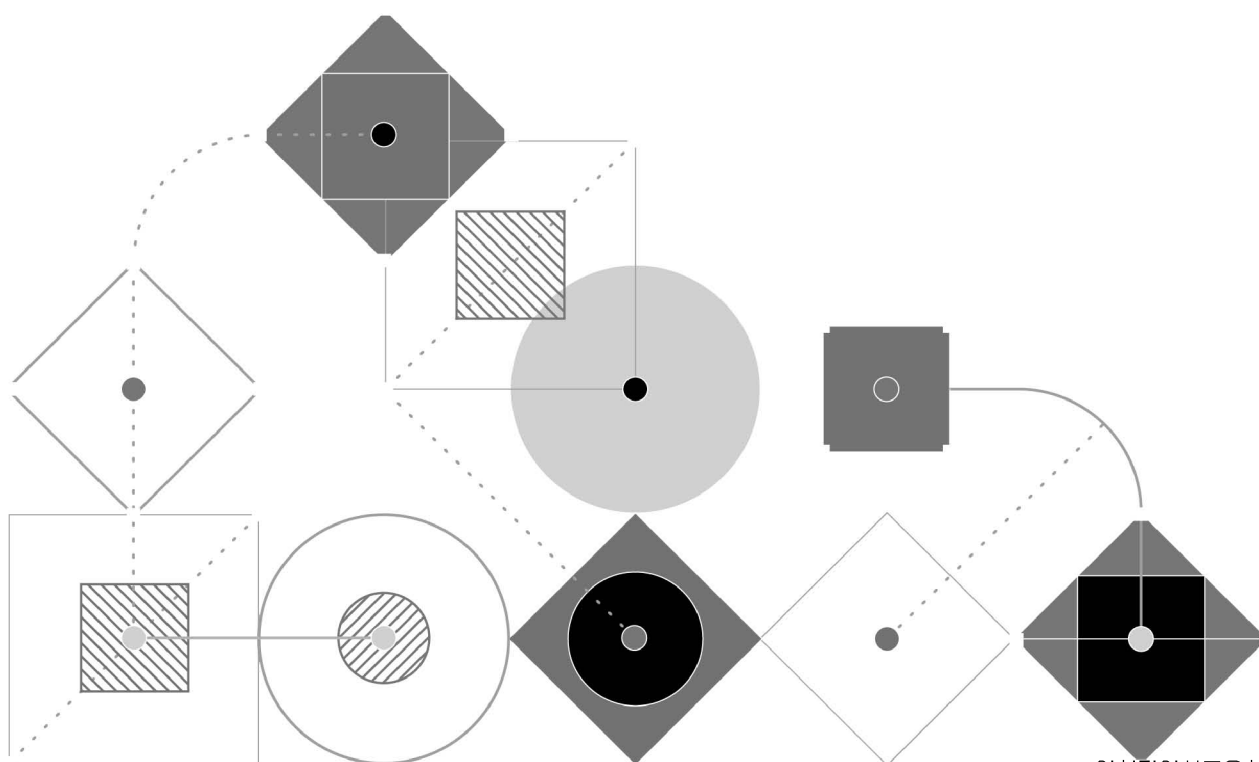
부 칙(2017. 07.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7.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2. 3. 1.] [교육부훈령 제402호, 2022. 3. 1.,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 ① 임용권자(임용제청 권자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원로교사의 배치)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 또는 유치원을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임용

제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 승진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시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되 남녀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 조정) ① 승진규정 제28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 요소별 점수의 조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교사다면평가표의 요소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점수 조정은 요소별로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를 동일하게 해야 하며, 9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조정 요소와 사유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① 승진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연구대회는 연구대회관리규정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평정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구대회 입상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평정한다.

1. 최상위등급 입상실적 : 1등급
2. 차상위등급 입상실적 : 2등급
3. 기타 등급 또는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입상실적 : 3등급

제10조(연구실적 입상 확인 및 기록) 임용권자가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할 때에는 연구대회 개최기관·단체로부터 통보된 입상자명단·등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점) 승진규정 제41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점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교감·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감·원감 및 교장·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작성시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교감·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단, 동일한 자격종별

내에서 발령과목이 변경된 경우(1급에서 2급으로 또는 2급에서 1급으로)에는 변경 전·후의 1급 정교사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하고,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한다.

2. 교장·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 교(원)감자격연수성적

② 교육전문직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전직임용

제13조(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시·도교육감은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가 최초 전직임용을 위한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 없이도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제2호의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6.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의 각호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제14조의2(수당 등) 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교원·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 등) ① 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이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상호간 또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직 등의 제한)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제5장 전보임용

제18조(전보계획)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교원전보를 위해 대상 교원의 범위 및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의 전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장애교원과 다자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전보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전보구역 등) 임용권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 거리·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인사구역 및 인사구역별 근무기간 등을 정한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정기전보) ① 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동일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임용령 제13조의3제5항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③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 및 전문교과담당 교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비정기전보) ①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제22조(전직전보의 제한)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전보의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여자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전보권자는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휴직기간 연장)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휴직자 실태파악) ①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

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②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제27조(설치) 시·도 교육청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8조(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순위인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9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심의 사항 등)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
2.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3. 임용령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
6. 보직 장학관·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장·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교장·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2.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3. 그 밖에 교장·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③ 제1항제3호 중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2.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교장·원장 중임 또는 원로교사의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제8호의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⑥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승진·전직·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변경일의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회의결과의 공개) 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제8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34조(설치)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9장 시간선택제 근무

제36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4. 그 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과 학교장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지정여부를 정한다.
- ③ 학교 이외 기관 소속 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추천 절차 등을 준용하여 추천하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④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업무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한다.
- ⑤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37조(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시간, 유형 등) ①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배치시기는 매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고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9월 1일에도 배치할 수 있다.

- ②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3년 이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를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기간은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한다.
- ③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전환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일 최소 3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지정하지 않는다.
- ④ 시간선택제 근무 중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기 시작 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 ⑥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겸직 허가 심사시 전환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육아·가족간병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중에는 대학원 주간과정 진학과 이를 통한 학위취득을 할 수 없다.

제38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배치 등) ①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 및 기관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및 충원여건상 현재 재직중인 학교 및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허용이 곤란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 학교 및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학교 및 기관을 정하여 소속 교사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해당 학교 및 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교사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 중 타 학교 및 기관으로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다.

제39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재직기간 계산) 시간선택제 교사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한다.

제40조(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정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시간선택제 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②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 전출,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가 전환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④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전환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한다.

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6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41조(시간선택제 교사의 인사관리) ① 시간선택제 교사의 정·현원은 전일근무 교사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6개월마다 전환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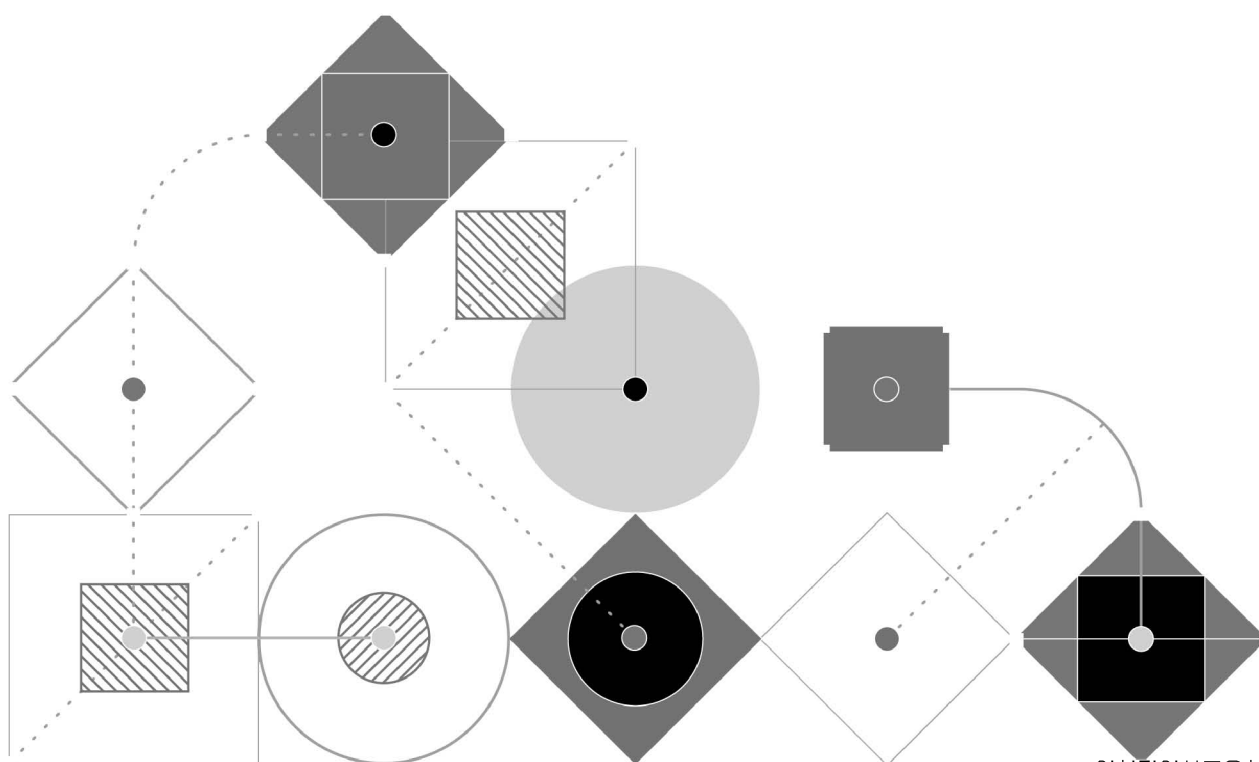
③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02호, 2022. 3. 1.>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1988. 8. 1. 개정	2006. 11. 29. 개정
1988. 12. 31. 개정	2007. 11. 29. 개정
1991. 1. 30. 개정	2008. 11. 28. 개정
1992. 1. 24. 개정	2009. 4. 20. 개정
1992. 11. 17. 개정	2009. 11. 24. 개정
1993. 9. 1. 개정	2010. 11. 25. 개정
1993. 11. 15. 개정	2011. 11. 24. 개정
1994. 11. 17. 개정	2012. 11. 23. 개정
1995. 11. 17. 개정	2013. 11. 26. 개정
1996. 11. 20. 개정	2014. 11. 27. 개정
1997. 11. 27. 개정	2015. 8. 10. 개정
1998. 12. 19. 개정	2016. 8. 11. 개정
1999. 11. 24. 개정	2017. 8. 28. 개정
2000. 12. 20. 개정	2018. 8. 16. 개정
2001. 12. 3. 개정	2019. 8. 22. 개정
2002. 12. 7. 개정	2020. 8. 19. 개정
2003. 11. 30. 개정	2021. 8. 11. 개정
2004. 11. 30. 개정	2022. 8. 8. 개정
2005. 11. 29. 개정	2023. 8. 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중등 교사, 관내 공립 중학교교원(교감 및 교사)에 적용한다.(개정: 2016.8.11., 2018.8.16., 2019.8.22.)

제2장 신규 임용

제3조(신규임용)

-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 발령된 자로서 과목별로 임용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름, 이하 같음) 신규임용후보자는 근무지를 지정할 때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8.22.)

- ② (삭제: 2018.8.16.)

제4조(계약제교원의 임용) 계약제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장 전 보

제5조(전보 계획)

- ①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 ② (삭제: 2014.11.27.)

제6조(인사군과 전보과정)

-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제5조제2항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중학교(공동 및 기타인사군 제외)를 동일 급지로 하고 남녀 학교, 학교규모, 학교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2개 일반인사군과 1개 공동인사군 및 기타인사군으로 편성한다.(개정: 2014.11.27., 2018.8.16., 2019.8.22., 2020.8.19., [2023.8.8.](#))

일 반 인 사 군		공동인사군	기타인사군
1 인사군	2 인사군		
인천남중 제물포여중 관 교 중 용현여중 신흥여중 선화여중	신 흥 중 남인천여중 용 현 중 관교여중 선 인 중 인화여중 인 주 중	화도진중 인천공항중 영 중 중 용 유 중 인천중산중 인천하늘중 인천운서중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 흥 중 덕 적 중 연 평 중 대 청 중 백 령 중

② 근무기간

1. 동일직위, 동일교(직속기관 포함) 근무기간은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이상 5년(기타인사군의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단, 담당 누적 근무기간이 3년인 경우), Wee 센터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간주한다.(개정: 2012.11.23., 2014.11.27., 2016.8.11., 2017.8.28., 2019.8.22., 2021.8.11.)

2.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정기전보일 현재 현임교에서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4.11.27., 2017.8.28., 2019.8.22., 2022.8.8., 시행:2024.3.1)
3. 중·고간 전보 시 근무기간은 제2항제1호에 준한다.
4. 현임교 5년 이상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간주한다.
5.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의 현임교 근무기간은 현임교 만기근속연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③ 전보서열명부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정원과목별로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1.27.)
2.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 (개정: 2022.8.8.)

만기 근무기간	평 정 점		상 한 점
	월	1년	
5년	0.100	1.20	6.00
3년	0.167	2.00	6.00

나. 교육활동 경력 평정 (개정: 2012.11.14, 2015.8.10, 2016.8.11, 2019.8.22, 2020.8.19, 2022.8.8., 2023.8.8.)

교육활동 경력	만기 근무 기간	평정점	
		1월	1년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파견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교사, 공동실습소 근무교사, 교무행정지원팀 소속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소속교사, 신설학교 겸임근무교사	5년	0.100	1.20
	3년	0.150	1.80

- 1)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만기 근무기간 5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3년 이상 3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2.4점 가산
4년 이상 4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2점 가산

나) 만기 근무기간 3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2년 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8점 가산

3) 1)과 2)에서 사용한 교육활동 경력을 제외하고, 보직교사 실경력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월 0.100점을 추가 평정할 수 있다.

다. 교육 총경력 환산점

당해 연도 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 호봉을 5% 환산하여 점수화한다.(단,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28.)

라. 근무성적 환산점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에서 80점을 공제한 점수의 1/20을 근무성적 환산점으로 한다.(개정: 2014.11.27., 2016.8.11., 2018.8.16.)

마. 가산점 평정

- 1) 관내전보 희망자 중 현임교에서 교육감 표창(매학년도 말에 ‘교육활동 유공 교원 표창’으로 수여하는 표창에 한함) 또는 교육장 표창(‘큰 보람 남부교육상’에 한함)을 받은 자는 관내전보 평정점에 0.1점, 큰 보람 남부교육상 중 ‘남부 으뜸교사상’을 받은 자는 0.3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0.4점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학교 근무 연한 중 받은 표창 중 2회까지 적용한다)(개정: 2019.8.22.)
- 2)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른 서해5도 소재 학교에서 만기 근무한 교사의 전보평정점에 2.5점을 가산한다.(신설: 2019.8.22.)
- 3) 웅진군 덕적면 소재 학교에서 만기 근무한 교사의 전보 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다.(신설: 2019.8.22.)
- 4) 현임교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교사 또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교사에게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의 10%를 가산한다.
(신설: 2019.8.22.) (개정: 2020.8.19.)
- 5)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보평정점에 월 0.025점을 가산한다.(신설: 2019.8.22.)
- 6) 마목의 2)와 3)를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만기 근무한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전보평정점에 0.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8.11.)

7) 현임교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의 전보 평정점에 1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8.11)

3.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은 1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처리한다.
4.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는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활동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자,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4.11.27., 2017.8.28.)
5.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보 유예가 확정된 자는 전보서열 명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8.19.)
6. 전보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정기전보일에 한하며, 학기 중 결원보충은 신규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④ 전보의 과정

동일직위로 동일교, 동일인사군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의 전보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작성한 순위명부에 의하여 동교과 동수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육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급 증감으로 인한 교원정원을 조절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하되,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우선 할 수 있고, 중·고간 전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개정: 2014.11.27., 2019.8.22.)
 - 1순위 :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높은 자(개정: 2018.8.16.)
 - 2순위 :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에는
 -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개정: 2018.8.16.)
 - 나. (신설: 2014.11.27.)교육활동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개정: 2018.8.16.)
 - 다.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자(개정: 2018.8.16.)
 - 라.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자(개정: 2018.8.16.)
 - 마.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2. 인사군 및 학교 희망
 - 가. 인사군 희망 :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일반 및 공동인사군을 희망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나. 학교희망

- 1) 일반인사군으로의 학교 희망은 희망인사군에 속한 학교 중 3개교까지 할 수 있다.
- 2) (삭제: 2020.8.19.)
- 3) 공동인사군 희망은 현임교의 인사군에 관계없이 공동인사군, 공동인사군 및 1개의 일반인사군에서 총 3개교까지 희망할 수 있다.(개정: 2016.8.11.)

다. 직전 근무학교는 희망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단,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선수활동을 한 교사 또는 특기지정학교 육성종목을 3년 이상 지도하여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교사로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또는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9.8.22.)
-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 4) (삭제: 2013.11.26.)
- 5) (삭제: 2013.11.26.)
- 6) 본 규정으로 전보 불가능한 교과 교사

라. (삭제: 2013.11.26.)

마. (삭제: 2016.8.11.)

3. 기타지역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6조제4항제3호에 의하되, 관내교사의 전보유예는 제7조제5항제8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9.)

4. 특수교사 및 비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가. 특수교사

- 1) 삭제(개정: 2016.8.11.)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전보내신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근무경력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로 한다. (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만기근무자는 제외)(개정: 2016.8.11., 2018.8.16., 2020.8.19., 2021.8.11.)
- 3) 특수교육지원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 4) 현임교에서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을 3년 누적 담당하여 만기가 된 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2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9.8.22.)(개정: 2021.8.11.)

나.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

- 1) 기타지역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 내신자 중, 기타지역으로의 내신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지역 근무경력이 적은 순에 의거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0.8.19.)
- 2) 기타지역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다. 전문상담교사

- 1) Wee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개정: 2016.8.11., 2018.8.16., 2019.8.22., 2020.8.19., 2021.8.11.)
 - 1순위: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유예를 신청한 자
 - 2순위: 타시도 교육청 전임교사
 - 교육경력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낮은 자
 - 3순위: 신규임용자
 - 4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 경력이 없는 교사
 -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 5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 경력이 적은 교사(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자 순)
- 2) Wee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정기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사의 전보 시 인사군과 학교의 배정은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에 의하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1. 교육상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 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전입예정인원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우선 전보 가능(단, 교원 양성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전보 내신 전에 공개)(개정:2019.8.22.)
2. 신설학교 설립사무 업무를 담당할 교사의 경우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우선전보발령 요청 가능(개정: 2014.11.27., 2019.8.22.)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전보일 기준 만57세 이상인 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중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개정: 2014.11.27., 2017.8.28., 2019.8.22.)
4.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7.8.28., 2019.8.22.)

② 다음 각 호의 교사에 한하여 해당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제1항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발령할 수 있다.(단,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우선전보 발령할 수 없다.)

1. 체육특기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할 교사(단,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선수활동을 한 교사 또는 특기지정학교 육성종목을 3년 이상 지도하여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교사로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또는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2. (삭제: 2012.11.23.) ➡ [부칙 참조]
3. (삭제: 2013.11.26.)
4. (신설: 2014.11.27.) 신설(이전)학교의 경우 3년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교사(단, 전입예정교사의 20% 이내)(개정: 2015.8.10., 2016.8.11.)
5. (신설: 2014.11.27.)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사

③ 희망한 학교에 전보희망 교사가 초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8.22.)

④ 인사군내의 교사 충원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다음 순에 의한다.

1. 관내전보교사
2. (삭제: 2013.11.26.)
3. 타 교육지원청 전입교사 또는 고등학교 전입교사(개정: 2014.11.27.)
4. 타 시·도 전입교사
5. 신규임용교사

⑤ 전보의 유예

만기근속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8.28.)

1. 체육특기지정학교의 해당특기를 지도하는 체육교사는 1년씩 2회
2. (삭제: 2013.11.26.)
3. 연구학교 및 정책추진학교 근무자로서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에 한하여 1년
4.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자는 1년씩 2회
5.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1년
6. (삭제: 2014.11.27.)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는 1년(개정: 2019.8.22.)
8. (신설: 2014.11.27.) 기타인사군 학교 중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자(단, 당해학교로의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1년(호 변경: 2014.11.27.)

⑥ 전보의 유보

1. 대치 불가능한 교과담당자는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보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3. (삭제: 2012.11.23.)

⑦ 초빙교사(개정: 2013.11.26.)

1.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 요청 시 현임교 만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사 배정정원 일정비율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12.11.14.)
- 가. (삭제: 2012.11.14.)
- 나. (삭제: 2013.11.20.)
- 다. 교장공모제 학교: 50% (삭제: 2013.11.20.)(개정: 2013.11.20.)

- 라. 자율형 공립학교: 100%
- 마. 일반학교: 10% (개정: 2014.11.17.)
- 바. 자율학교: 30% (단, 2024. 3. 1.까지 지정된 교과교실제 선진형에 한함)(개정: 2012.11.30., 2023.8.8.)
- 사. (삭제: 2014.11.17.)
- 아. 자율학교: 50% (단, 결대로자람학교에 한함)(신설: 2014.11.17.)(개정: 2015.8.10., 2023.8.8.)
- 2.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 임용절차, 인사 및 교사초빙 응모자 제출서류 등은 ‘교사초빙제 실시계획’ 및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제2항제1호의 A, B, C지역은 초빙할 수 없다.(개정: 2012.11.23.)
- 3. 기타인사군 소속 전보대상교사는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해 가산점을 받는 특수지역 학교로 응모할 수 없다.(개정: 2014.11.27.)
- 4. (삭제: 2014.11.27.)
- ⑧ (삭제 : 2012.11.23.)
- ⑨ 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 내신하여야 한다. 단, 상피제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응진군 소재 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9.8.22.)(개정: 2023.8.8.)

제8조(비정기 전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인사군과 관계없이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다.(개정: 2017.8.28.)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 및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13.11.26., 2021.8.11.)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6.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
7.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8. 해당학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내신한 자
9. 수석교사 직위를 면하는 자(신설: 2019.8.22.)
10.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자(신설: 2019.8.22.)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자(신설: 2019.8.22.)
12.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신설: 2021.8.11.)

제9조(시·도간 교류) 교사의 시·도 간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시·도 간 교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8.22.)

제10조(국·공립간 교류) 교원의 국·공립 간 교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국·공립 간 교류 기준에 의한다.

제10조의2(유·초·중등간 교류) 보건의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유·초·중등간 교류는 동교과,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방교류 할 수 있다.(신설: 2020.8.19.)(개정: 2021.8.11.)

- ①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서열 평정점은 필요한 경우 중등교사로 간주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산정한다.

제11조(교감의 전보)

- ① 교감의 전보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인사군, 근무기간, 전보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범위 내에서 해당직 경력, 지도관리능력, 청렴성, 학교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 교원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8.10.)
- ② 교감은 내신 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③ 제7조제5항제4호 및 제8조는 이를 교감에도 적용한다.

제11조의2(수석교사의 전보)

(본조신설: 2014.11.27.) 수석교사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전보한다.

제4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12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우선전보요청자 및 전보유예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활동 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11.)
 8.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④ (신설: 2015.8.1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자문할 경우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3.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시행일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임교는 이 기준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과 전보과정의 학교로 보며, 현임교(기관)의 근무기간도 동 기준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제6조제1항의 인사군의 공동학교군에 관한 사항은 2005년 3월 1일자 전보부터 적용하며 2004년 3월 1일자 전보에는 공항중을 기존의 2학교군으로 편성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 11. 30.)
4. 제6조제3항제2호마목1)은 2004. 3. 1일자이후 신설되는 가칭 남부교육표창(상)부터 인정하여, 2005. 3. 1일자 전보 시부터 적용한다.(신설: 2003. 11. 30.)
5. 본 기준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부 칙(2004.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계법규에 따른다.

부 칙(2005.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공동인사군에 대한 근무기간 및 현임교 근무평정 경과 조치)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제2호가목은 2006년 3월 1일자 공동인사군으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교육활동 경력평정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제3항제2마목은 200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4. (전보의 제한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제4항제2호마목은 2006년 3월 1일자 기타인사군 학교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5. (공동인사군에 대한 전보유예의 특례 경과 조치)
제7조제6항제3호는 2006년 3월 1일자 공동인사군으로 발령된 자부터 적용하며 그전 발령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6.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우선 전보에 대한 예외 조치)
제7조제1항제3호는 기타인사군으로의 전보는 제외한다.

부 칙(2007.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1.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가. (근무기간)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 2. 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나. (현임교근무경력평정점 및 교육활동경력평정점)제6조제3항제2호가목, 나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 2. 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삭제: 2012. 11. 23.)

부 칙(2010. 11. 25.)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초빙교원) 제7조제7항제2호 단서 조항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1. 23.)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 우선전보 규정 삭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4. 3. 1.자 정기전보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현임교근무경력평정점 및 교육활동경력평정점)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4. (전보의 유보 삭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6항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3. 1일자 이전에 현임교로 전보된 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3.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2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3. 1. 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제7조제7항제1호마목(일반학교 초빙비율)은 2016.3.1.자부터 적용하되, 2015.3.1.자는 15%를 적용한다.

부 칙(2015. 8.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1.)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8.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2.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8. 16.)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19. 8. 22.)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20. 8. 19.)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단,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일자 정기전보까지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속교사(2020년 3월 1일까지 발령된 자)에 한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21. 8. 11.)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22.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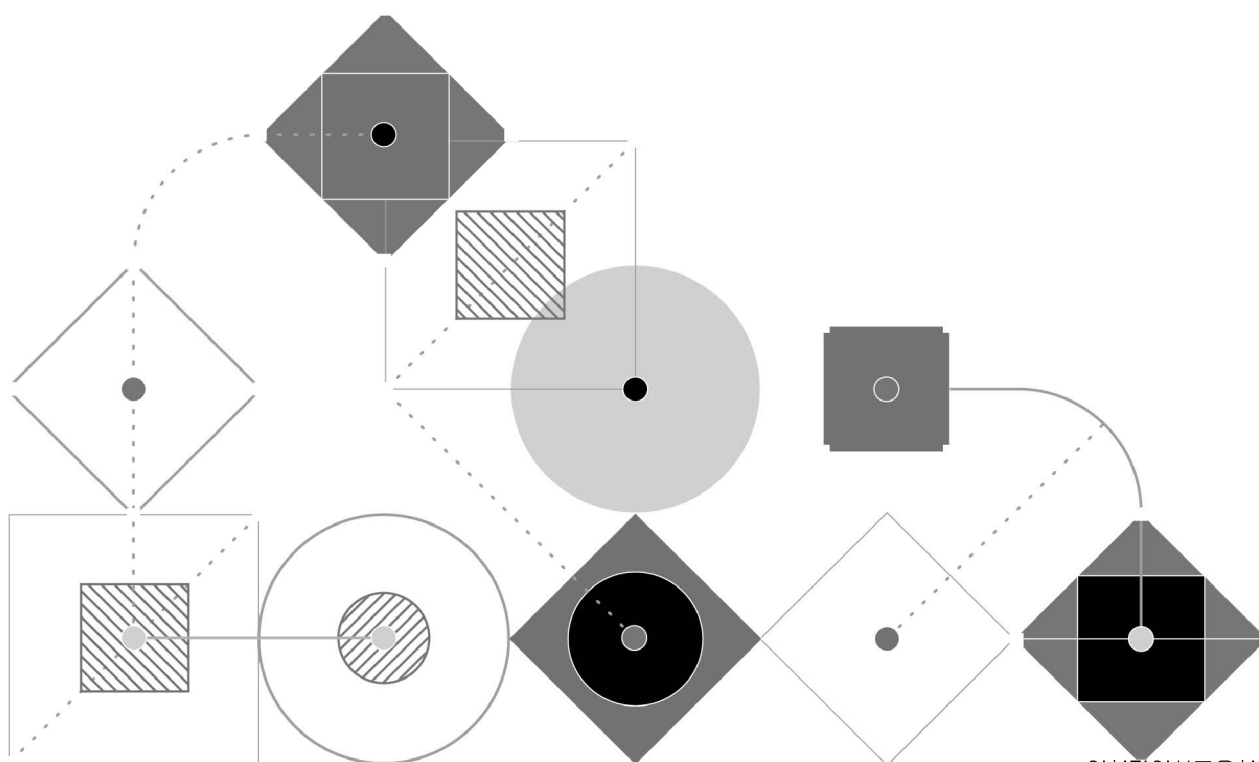
1.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근무기간 및 경력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2호와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은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8. 8.)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북부교육지원청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985. 7. 24. 개정	2005. 11. 24. 개정
1985. 11. 25. 개정	2006. 11. 28. 개정
1986. 7. 24. 개정	2006. 12. 21. 개정
1989. 1. 1. 개정	2007. 11. 26. 개정
1991. 1. 25. 개정	2008. 11. 26. 개정
1992. 1. 14. 개정	2009. 11. 24. 개정
1992. 11. 21. 개정	2010. 11. 25. 개정
1993. 11. 20. 개정	2011. 11. 24. 개정
1994. 11. 16. 개정	2012. 11. 26. 개정
1995. 2. 16. 개정	2013. 11. 26. 개정
1995. 11. 6. 개정	2014. 11. 26. 개정
1996. 11. 25. 개정	2015. 8. 7. 개정
1997. 12. 1. 개정	2016. 8. 4. 개정
1998. 11. 26. 개정	2017. 8. 1. 개정
1999. 11. 25. 개정	2018. 8. 3. 개정
2004. 12. 15. 개정	2019. 8. 6. 개정
2001. 12. 1. 개정	2020. 8. 12. 개정
2002. 11. 30. 개정	2021. 8. 13. 개정
2003. 11. 28. 개정	2022. 8. 8. 개정
2004. 11. 24. 개정	2023. 8. 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에 의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원, 관내 공립 중학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원, 관내 공립 중학교 교원(교감 및 교사)에 적용한다.(개정: 2018. 8. 3.)

제2장 신규 및 계약제교원 임용

제3조(신규임용)

-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발령된 자로서 과목별로 임용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에 따름, 이하 같음) 신규임용 교사는 근무지를 지정할 때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② (삭제: 2018. 8. 3.)

제4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①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의한다.

② (삭제: 2004. 2. 29.)

제3장 전보

제5조(전보 계획)

①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삭제: 2004. 2. 29.)

제6조(인사군과 전보)

① 관내 인사군은 남녀 학교,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3개 일반인사군과 1개 공동 인사군으로 편성한다.(개정: 2014. 11. 26., 2019. 8. 6., 2023. 8. 8.)

1군	2군	3군	공동인사군
부평동중학교 부평서여자중학교 부흥중학교 부원중학교 갈산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삼산중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계산중학교 명현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동양중학교 (12교)	부평서중학교 산곡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광중학교 부일중학교 구산중학교 인천상정중학교 인천안남중학교 임학중학교 서운중학교 계양중학교 인천계수중학교 (12교)	부평중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동암중학교 산곡남중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진산중학교 인천효성중학교 계산여자중학교 북인천중학교 작전중학교 인천양촌중학교 (11교)	청천중학교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근무기간

1. 동일직위, 동일교 근무기간은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이상 5년[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단, 담당 누적 근무기간이 3년인 경우)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간주한다.(개정: 2016. 8. 4., 2017. 8. 1., 2019. 8. 6., 2021. 8. 13.)
2.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정기전보일 현재 현임교에서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4.11.26., 2017.8.1., 2022.8.8.)
3. 현임교 5년 이상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간주한다.
4.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의 현임교 근무기간은 현임교 만기근속연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5. 중·고간 전보 시 근무기간은 제2항제1호에 준한다.(개정: 2018. 8. 3.)

③ 전보서열명부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과별로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개정: 2018. 8. 3., 2022.8.8.)

만기근무 기간	평 정 점		상한점
	1월	1년	
5년	0.100	1.20	6.00
3년	0.167	2.00	6.00

나. 교육활동 경력평정(개정: 2015. 8. 7., 2016. 8. 4., 2020. 8. 12., 2022.8.8., [2023.8.8.](#))

교육활동 경력	만기근무 기간	평정점	
		1월	1년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파견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교무행정지원팀 소속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소속교사, 신설학교 겸임근무교사	5년	0.100	1.20
	3년	0.150	1.80

- 1)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만기 근무기간 5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u>3.6점</u> 가산
3년 이상 3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u>2.4점</u> 가산
4년 이상 4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u>1.2점</u> 가산

나) 만기 근무기간 3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u>3.6점</u> 가산
2년 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u>1.8점</u> 가산

- 3) 1)과 2)에서 사용한 교육활동 경력을 제외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직교사 실경력에 한하여 월 0.100점을 추가 평정할 수 있다.

다. 교육총경력 환산점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호봉을 5% 환산하여 점수화한다. 단,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8. 4., 2017. 8. 1.)

라. 근무성적 환산점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에서 80점을 공제한 점수의 1/20을 근무성적 환산점으로 한다.(개정: 2014. 11. 26., 2016. 8. 4., 2018. 8. 3.)

마. 가산점 평정

- 관내전보 희망자 중 다음 항목의 재직기간 실적에 대하여 관내 전보 평정점에 각각 평정하여 합산한다. 단, 0.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24. 3. 1.) (2024. 3. 1. 이전 수여한 표창 가산점의 유효기간은 2026.3.1.자 정기전보까지 지하고 이후 정기전보에서 가산점은 모두 제외한다.) (개정: 2023. 8. 8.)
 - 장관 표창(0.3점)
 - 교육감 표창(0.3점)
 - 교육장 표창(0.3점)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 소속 교사,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보평정점에 월 0.025점을 가산한다.(개정: 2019. 8. 6.)
- 현임교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교사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교사에게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의 10%를 가산한다.(신설: 2019. 8. 6., 2020. 8. 12.)
- 현임교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의 전보 평정점

에 1점을 가산한다.(신설: 2021. 8. 13.)

3.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은 1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처리한다.
4.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는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활동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자,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4. 11. 26., 2017. 8. 1., 2018. 8. 3.)
5.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보유예가 확정된 자는 전보서열 명부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 8. 12.)
6. 전보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정기전보일에 한하며, 학기 중 결원보충은 신규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④ 전보의 과정

동일직위로 동일교, 동일인사군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의 전보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8. 8. 3.)

1. 본인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하나의 인사군에 속한 학교 중 3개교까지 희망할 수 있다. 단, 공동인사군 소속 기관을 희망할 경우 공동인사군 및 1개의 일반인사군에서 총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6., 2016. 8. 4.)
2. 직전 근무교는 희망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가.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9. 8. 6.)
 - 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 라. (삭제: 2012. 11. 26.)
 - 마. 본 규정으로 전보 불가능한 교과교사

3. 특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가. 특수교사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및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 전보내신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경력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동일한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

은 자로 한다.(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만기근무자는 제외)(개정: 2016. 8. 4., 2018. 8. 3., 2020. 8. 12., 2021. 8. 13.)

- 2) 특수교육지원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 3) 현임교에서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을 3년 누적 담당하여 만기가 된 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2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1. 8. 13.)

나. 전문상담교사

- 1) Wee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개정: 2016.08.04., 2018. 8. 3., 2019. 8. 6., 2020. 8. 12., 2021. 8. 13.)
 - 1순위: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유예를 신청한 자
 - 2순위: 타시도 전입교사
 - 교육경력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늦은 자
 - 3순위: 신규임용자
 - 4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경력이 없는 교사
 -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 5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경력이 적은 교사(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자 순)
- 2) Wee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4. 기타지역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다.(신설: 2014. 11. 26.)(개정: 2020. 8. 12.)

제7조(정기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내 교사의 전보 시 인사군과 학교의 배정은 전보서열명부 고 순위자 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7. 8. 1.)

1. 교육상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 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전입예정인원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전보 내신 전에 공개한다.

2. 신설학교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설립사무 담당을 목적으로 우선전보를 요청한 교사(개정: 2019. 8. 6.)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전보일 기준 만57세 이상인 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중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교사(개정: 2014. 11. 26., 2017. 8. 1., 2019. 8. 6.)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7. 8. 1., 2019. 8. 6.)
 6. (삭제: 2012. 11. 26.)
 7. (삭제: 2012. 11. 26.)
- ② 다음 각 호의 교사에 한하여 해당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제1항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 8. 3.)
- 단,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우선전보할 수 없다.
1.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특기를 지도할 교사
 2. (삭제: 2012. 11. 26.)
 3. (삭제: 2013. 11. 26.)
 4. (삭제: 2013. 11. 26.)
 5. (삭제: 2013. 11. 26.)
 6. 신설(이전)학교의 경우 3년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교사(단, 전입예정교사의 20% 이내)(신설: 2014. 11. 26.)(개정: 2015. 8. 7., 2016. 8. 4.)
 7.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
- ③ 희망한 학교에 과목별 전보희망 교사가 초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군, 희망교 및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14. 11. 26.)(개정: 2019. 8. 6.)
- ④ 관내의 교사 배치는 학교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다음 순에 의한다.
1. 관내 전보자
 2. 타교육지원청 전입자 및 고등학교 전입자
 3. 타시도 전입자 및 사립 특채교사

4. 신규임용자

⑤ 전보의 유예

만기근속전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 8. 1.)

1.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실제로 지도하는 체육교사는 1년씩 2회
2. (삭제: 2013. 11. 26.)
3. 연구학교 및 정책추진 학교 근무자로서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에 한하여 1년
4. (삭제: 2002. 11. 30.)
5.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자는 1년씩 2회
6. (삭제: 2013. 11. 26.)
7. (삭제: 2013. 11. 26.)
8.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는 1년(개정: 2013. 11. 26., 2019. 8. 6.)
9. (삭제: 2013. 11. 26.)
10. (삭제: 2014. 11. 26.)
11. (삭제: 2013. 11. 26.)
12.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⑥ 전보의 유보

1. 대치 불가능한 교과 담당자는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보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3. (삭제: 2004. 11. 24.)

⑦ (삭제: 2018. 8. 3.)

⑧ (삭제: 2019. 8. 6.)

⑨ 초빙교사(개정: 2013. 11. 26.)

1.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 요청 시 현임교 만기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사 배정정원의 일 정비율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 가. (삭제: 2012. 11. 26.)
- 나. (삭제: 2013. 11. 26.)

다. 교장공모제 학교: 50%(삭제: 2013. 11. 26.)

라. 자율형 공립학교: 100%

마. 일반학교: 10%(개정: 2014. 11. 26.)

바. 자율학교: 30%(단, 2024. 3. 1.까지 지정된 교과교실제 선진형에 한함)(신설: 2010. 11. 18.)(개정: 2023. 8. 8.)

사. (삭제: 2014. 11. 26.)

아. 자율학교: 50%(단, 결대로자람학교에 한함)(신설: 2014. 11. 26.)(개정: 2015. 8. 7., 2023. 8. 8.)

2.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 임용절차, 인사 및 교사초빙 응모자 제출서류 등은 ‘교사초빙제 실시계획’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2. 11. 26.)

3. (삭제: 2010. 11. 25.)

4. (삭제: 2014. 11. 26.)

5. (삭제: 2014. 11. 26.)

⑩ 사서교사의 전보는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 근무기간, 전보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2년 이상 5년 이내에서 배치인원, 수급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 8. 3., 2020. 8. 12.)

⑪ 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 내신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6.)

제8조(비정기전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원은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다.(개정: 2017. 8. 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및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13. 11. 26., 2021. 8. 13.)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6.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

7.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8. 해당학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내신한 자

9. 수석교사 직위를 면하는 자(신설: 2019. 8. 6.)
10.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자(신설: 2019. 8. 6.)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자(신설: 2019. 8. 6.)
12.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신설: 2021. 8. 13.)

제9조 [관외(중·고간 및 타교육지원청) 전보] (개정: 2014. 11. 26., 2019. 8. 6.)

- ①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동교과 동수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급 증감으로 인한 교원 정원을 조절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 ② 교육지원청간의 전보에 있어서 동수 교류에 따라 전보가 불가능한 자의 전보는 관내전보로 대처할 수 있다.
- ③ 관외 전보의 순위는 전보서열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한다. 단, 중·고간 전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개정: 2019. 8. 6.)
- ④ (삭제: 2004. 11. 24.)

제9조의2(유·초·중등간 교류)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유·초·중등간 교류는 동교과,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방교류 할 수 있다.(신설: 2020. 8. 12.)(개정: 2021. 8. 13.)

- ①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서열 평정점은 필요한 경우 중등교사로 간주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산정한다.

제10조(교감의 전보)

- ① 교감의 전보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인사군, 근무기간, 전보의 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범위 내에서 해당직 경력, 지도관리 능력, 청렴성, 학교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단,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년으로 한다.)(개정: 2015.08.07.)
- ② 교감은 내신 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③ 제7조제5항제5호와 제8조는 이를 교감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의2(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전보한다.(신설: 2014. 11. 26.)

제4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11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00.)
-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학급담임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6.)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우선전보요청자 및 전보유예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활동 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점직허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8. 13.)
 8.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신설: 2015. 8. 7)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자문할 경우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2002.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가. 이 기준 개정 시행일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임교는 이 기준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과 전보과정의 학교로 보며, 현임교의 근무 기간도 동 기준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삭제: 2004.11.24.)
3.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 따른다.

부칙(2003. 11.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1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5.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 3. 1.자 전보까지 관내 교사의 배치는 다음 순에 의한다.
 - 가. 북부 관내 교사(원로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교원은 전보대상서열에서 우선할 수 있다.)
 - 나. 서부교육지원청 전입교사
 - 다. 관외전입자 및 고등학교 전입교사
 - 라. 타시도 전입자 및 사립특채교사
 - 마. 신규임용교사

부칙(2005. 1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교육활동 경력평정에 대한 경과 조치) :
제6조제3항제2호의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7. 2. 28.자 발령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전보서열명부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6조제3항제2호의 마목에도 불구하고 2005학년도 이후의 수상자를 대상자로 한다.

부칙(2006. 11.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전보서열명부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6조제3항제2호의 마목에도 불구하고 2008. 2. 29.자 발령까지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06. 11.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9.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1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삭제: 2012. 11. 26.)

부칙(2010. 11. 25.)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나목의 단서 조항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3. 제7조제9항제2호의 단서 조항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4. 제7조제9항제3호의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1. 2. 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삭제 전 기준을 적용한다.
5. 제7조제10항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1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마목의 조항은 2013.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3. (삭제: 2012. 11. 26.)
4. 제7조제9항제1호사목의 조항 및 제4호는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 우선전보 규정 삭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4. 3. 1.자 정기전보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나.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다.
다.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기간 3년은 2013. 3. 1.자 이후 전보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제7조제9항제1호마목(일반학교 초빙비율)은 2016. 3. 1.자부터 적용하되, 2015. 3. 1.자는 15%를 적용한다.

부칙(2015. 08. 07.)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08. 0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08. 01.)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2.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8. 3.)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마목의 ‘스승의 날 기념 표창’은 2019년 3월 1일 이후에 수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8. 6.)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칙(2020. 8. 12.)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칙(2021. 8. 13.)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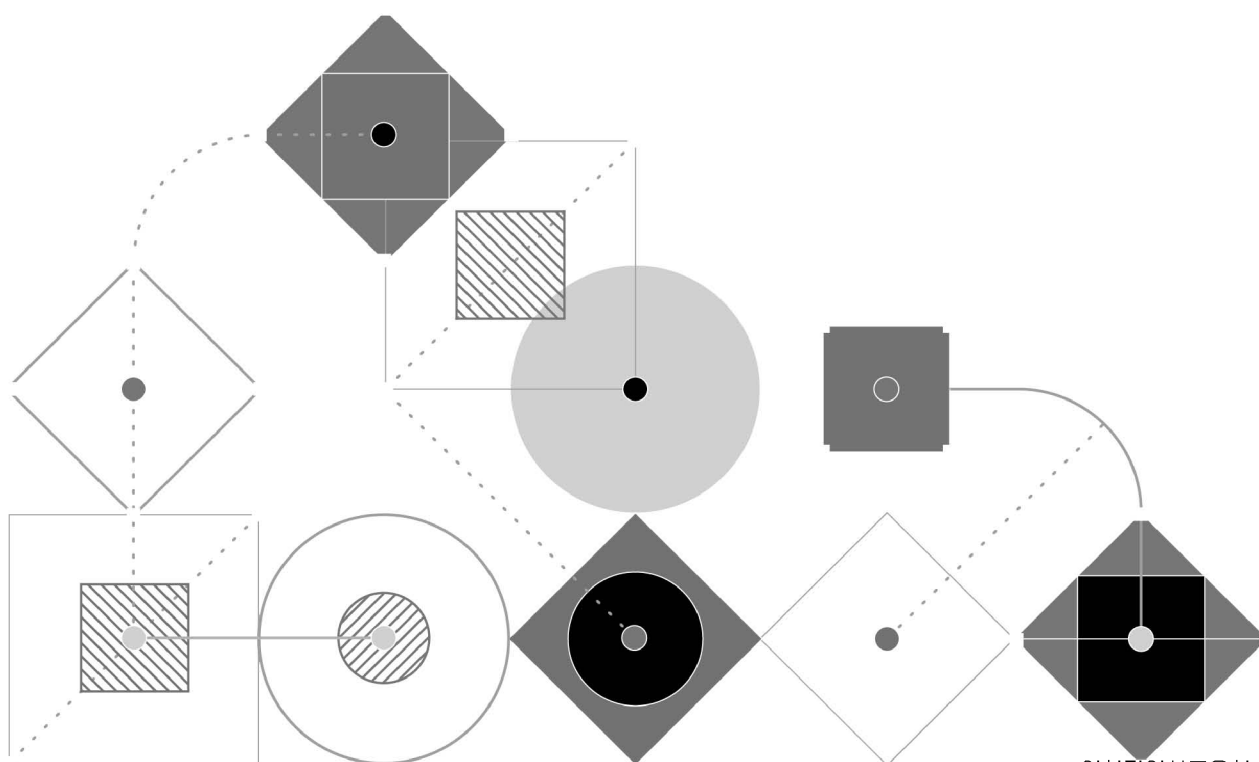
부칙(2022. 8. 8.)

1.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근무기간 및 경력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2호와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은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8. 8.)

1.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26. 3. 1.자 인사까지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제6조제④항과 관련하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하는 교사는 인사군에 관계없이 직전교를 제외한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
 - (2) 제7조제④항제2호 ‘타교육지원청 전입자 및 고등학교 전입자’의 관내 배치에 있어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입하는 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이외 관외 및 고등학교 전입자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996. 09. 01. 공포	2006. 11. 29. 개정	2016. 07. 28. 개정
1997. 12. 01. 개정	2007. 11. 29. 개정	2017. 07. 31. 개정
1998. 12. 01. 개정	2008. 11. 27. 개정	2018. 08. 10. 개정
1999. 11. 26. 개정	2009. 11. 30. 개정	2019. 08. 21. 개정
2000. 12. 16. 개정	2010. 11. 30. 개정	2020. 08. 14. 개정
2001. 12. 06. 개정	2011. 11. 30. 개정	2021. 08. 13. 개정
2002. 12. 02. 개정	2012. 11. 30. 개정	2022. 08. 08. 개정
2003. 11. 29. 개정	2013. 11. 29. 개정	2023. 08. 08. 개정
2004. 11. 30. 개정	2014. 11. 24. 개정	
2005. 11. 21. 개정	2015. 08.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원, 관내 공립 중학교 교원(교감 및 교사)에 적용한다.(개정: 2016.07.28.)

제2장 신규임용

제3조 (신규임용)

-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발령된 자로서 과목별로 임용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름, 이하 같음) 신규임용후보자는 근무지를 지정할 때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9.08.21.)

- ② (삭제: 2012.11.30.)

제4조 (계약제교원의 임용) 계약제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한다.

제3장 전 보

제5조 (전보 계획)

- ①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
- ② (삭제: 2007.11.29.)

제6조 (인사군과 전보과정)

- ① 관내 인사군은 남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3개 일반인사군과 1개 공동인사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1.24., 2016.07.28., 2017.07.31., 2018.08.10., 2020.08.14., 2021.08.13.)

1 군	2 군	3 군	공동인사군
상인천중학교 만수북중학교 간석여자중학교 남동중학교 연수중학교 청량중학교 옥련중학교 논곡중학교 인천성리중학교 인천정각중학교 인천고잔중학교 인천예송중학교 인천미송중학교	구월중학교 만수중학교 상인천여자중학교 만월중학교 청학중학교 인송중학교 인천여자중학교 능허대중학교 신송중학교 인천논현중학교 인천서창중학교 인천신정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만수여자중학교 구월여자중학교 만성중학교 연성중학교 선학중학교 연화중학교 인천중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동방중학교 인천해송중학교 인천사리울중학교 인천현송중학교	함박중학교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근무기간

1. 동일직위, 동일교(직속기관 포함) 근무기간은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이상 5년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단, 담당 누적 근무기간이 3년인 경우)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간주한다. (개정: 2016.07.28., 2017.07.31., 2019.08.21., 2021.08.13.)

2. 관내 중학교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정기전보일 현재 현임교에서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14.11.27., 2017.08.28., 2019.08.22., 2022.08.08.)
3. 중·고간 전보 시 근무기간은 제2항제1호에 준한다. (개정: 2014.11.24., 2018.08.10.)
4. 현임교 5년 이상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간주한다.
5.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의 현임교 근무기간은 현임교 만기근속 연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③ 전보서열명부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과별로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 (개정: 2012.11.30., 2022.08.08.)

만기근무 기간	평 정 점		상한점
	1월	1년	
5년	0.100	1.20	6.00
3년	0.167	2.00	6.00

나. 교육활동 경력평정 (개정: 2015.08.10., 2016.07.28., 2020.08.14., 2022.08.08., 2023.08.08.)

교육활동 경력	만기근무 기간	평정점	
		1월	1년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 파견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교무행정지원팀 소속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소속교사, 신설학교 겸임근무교사	5년	0.100	1.20
	3년	0.150	1.80

- 1)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만기 근무기간 5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3년 이상 3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2.4점 가산
4년 이상 4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2점 가산

나) 만기 근무기간 3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 기간	평 정 방 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2년 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8점 가산

3) 1)과 2)에서 사용한 교육활동 경력을 제외하고, 보직교사 실경력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월 0.100점을 추가 평정할 수 있다.

다. 교육총경력 환산점

당해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 현재 호봉을 5% 환산하여 점수화한다. 단,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7.31.)

라. 근무성적 환산점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에서 80점을 공제한 점수의 1/20을 근무성적 환산점으로 한다. (개정: 2014.11.24., 2016.07.28., 2018.08.10.)

마. 가산점 평점

1) 관내전보 희망자 중 현임교에서 다음 항목의 실적에 대하여 각각 평정하여 합산한다. 단,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교육감 표창 : 매학년도 말에 ‘교육활동 유공교원 표창’으로 수여하는 표창에 한하여 0.2점

나) 교육장 표창 : ‘동부푸른교육상’에 한하여 0.2점(2회까지 평정)

다) (삭제: 2019.08.21.)

2) 현임교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교사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교사에게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의 10%를 가산한다.

(신설: 2019.08.21., 개정: 2020.08.14.)

3)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보평정점에 월 0.02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19.08.21.)

- 4) 현임교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의 전보 평정점에 1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08.13.)
3.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은 1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처리한다.
4.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는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 활동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자,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4.11.24., 2017.07.31.)
5. 제7조제7항에 따라 전보유예가 확정된 자는 전보서열 명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8.14.)
6. 전보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정기전보일에 한하며, 학기 중 결원보충은 신규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④ 전보의 과정

동일직위로 동일교, 동일인사군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의 전보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육청간 전보

전보서열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동교과 동수로 전보하되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다만, 교육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학급증감으로 인한 교원정원 조절시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1순위 :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높은 자 (개정: 2018.08.10.)
- 2순위 :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에는
 -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개정: 2018.08.10.)
 - 나.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자 (개정: 2018.08.10.)
 - 다.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8.08.10.)

2. 관내 전보

가. 인사군 및 학교희망

- 1) 본인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하나의 인사군에 속한 학교 중 3개교까지 희망할 수 있다.
 - 2) 공동인사군에 속한 학교를 희망할 경우 공동인사군 및 1개의 일반인사군에서 총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07.28.)
- 나. 직전 근무교는 희망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개정: 2017.07.31., 2019.8.21.)
-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 4) 본 규정으로 전보 불가능한 교사

다. 관내 중학교의 통합교과(사회, 과학, 기술·가정)에 대한 전보는 각 과목별 전보서열명부에 의하여 제6조제3항제4호에 의거 전보를 실시하고 이후 수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교 교원조직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단, 공업계열은 기술 과목으로 간주한다.)

라. 특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6.07.28.)

1) 특수교사

가) (삭제: 2016.07.28.)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 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전보내신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근무경력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로 한다. (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만기근무자는 제외)

(개정: 2016.07.28., 2018.08.10., 2020.08.14., 2021.08.13.)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라) 현임교에서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을 3년 누적 담당하여 만기가 된 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2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8.21., 개정: 2021.08.13.)

2) 전문상담교사

가) Wee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16.7.25., 2018.7.19., 2019.8.21., 2020.08.14., 2021.08.13.)

- 1순위: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유예를 신청한 자
- 2순위: 타시도 교육청 전입교사
- 교육경력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늦은 자
 - 3순위: 신규임용자
 - 4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 경력이 없는 교사
 -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 5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 경력이 적은 교사 (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자 순)
- (개정: 2016.07.28., 2018.08.10.)

나) Wee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3. 기타지역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제6조제4항제3호에 의한다. (신설: 2014.11.24., 개정: 2020.08.14.)

가. (삭제: 2020.08.14.)

나. (삭제: 2020.08.14.)

다. (삭제: 2020.08.14.)

제7조 (정기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중학교 교사의 전보 시 인사군과 학교의 배정은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07.31.)
 1. 교육상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로, 전보서열명부 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전입예정 인원수 2배수의 범위 내인 교사. 단,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전보 내신 전에 공개한다.
 2. 신설학교 설립사무 업무를 담당할 교사의 경우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우선전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전보일 기준 만 57세 이상인 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중 현임교 2년 이상인 자 (개정: 2014.11.24., 2017.07.31., 2019.08.21.)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개정: 2017.07.31., 2019.08.21.)

② 다음 각 호의 교사에 한하여 해당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제1항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발령할 수 있다. 단,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우선전보 발령할 수 없다.

1.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할 교사

2. (삭제: 2012.11.30.)

3. (삭제: 2013.11.29.)

4. (삭제: 2013.11.29.)

5. (삭제: 2013.11.29.)

6. (신설: 2014.11.24) 신설(이전)학교의 경우 3년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단, 전임예정교사의 20% 이내) (개정: 2015.08.10., 2016.07.28.)

7. (신설: 2014.11.24)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사

③ 희망한 학교에 전보희망 교사가 초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 관내 중학교 교사의 교육청간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중등)」에 의한다. (개정: 2018.08.10.)

1. (삭제: 2018.08.10.)

2. (삭제: 2018.08.10.)

⑤ (삭제: 2020.08.14.)

⑥ 인사군내의 교사충원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다음 순에 의한다.

1. 관내 전보교사

2. 타교육지원청 전임교사 및 고등학교 전임교사 (개정: 2018.08.10.)

3. 타 시·도 전임교사 및 사립학교 특채 교사

4. 신규임용 교사

⑦ 전보의 유예

만기근속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07.31.)

1.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실제 해당 특기를 지도하는 교사는 1년씩 2회
2. (삭제: 2013.11.29.)
3. 연구학교 및 정책추진 학교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에 한하여 1년
4.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자는 1년씩 2회
5. (삭제: 2013.11.29.)
6. (삭제: 2013.11.29.)
7.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는 1년 (개정: 2013.11.29., 2017.07.31., 2019.08.21.)
8. (삭제: 2014.11.24.)
9. (삭제: 2013.11.29.)
10.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⑧ 전보의 유보

1. 대치 불가능한 교과담당자는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보 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 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⑨ 초빙 교사 (개정: 2012.11.30., 2018.08.10.)

1. 초빙교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초빙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2.11.30., 2018.08.10.)

- 가. (삭제: 2012.11.30.)
- 나. (삭제: 2013.11.29.)
- 다. (삭제: 2013.11.29.)
- 라. (삭제: 2013.11.29.)
- 마. (삭제: 2018.08.10.)
- 바. (삭제: 2018.08.10.)
- 사. (삭제: 2018.08.10.)
2. (삭제: 2018.08.10.)
3. (삭제: 2014.11.24.)
4. (삭제: 2014.11.24.)

- ⑩ 사서교사의 전보는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학교군), 근무 기간, 전보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2년 이상 5년 이내에서 배치인원 수급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07.31., 2020.08.14.)
 - ⑪ 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 내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1.)
 - ⑫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유·초·중등간 교류는 동교과,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방교류 할 수 있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1.08.13.)
1.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서열 평정점은 필요한 경우 중등교사로 간주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산정한다. (신설: 2021.08.13.)

제8조 (비정기 전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원은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7.3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3.11.29., 2021.08.13.)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6.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
7.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8. 해당학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내신한 자
9. 수석교사 직위를 면하는 자 (신설: 2019.08.21.)
10.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자 (신설: 2019.08.21.)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자 (신설: 2019.08.21.)
12.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신설: 2021.08.13.)

제9조 (교감의 전보)

- ① 교감의 전보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인사군(학교군), 근무기간, 전보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범위 내에서 해당직 경력, 지도관리능력, 청렴성, 학교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단,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08.10)
- ② 교감은 내신 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③ 제7조제7항제4호 및 제8조는 교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2.11.30.)

제9조의2 (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전보한다. (본조신설: 2014.11.24.)

제4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제10조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학급담임·교과전담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초빙교원 임용대상자, 우선전보 요청자 및 전보 유예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활동 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1.08.13.)
 8.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호변경: 2021.08.13.)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08.10.)

부칙 (2007. 11. 29. 이전)

- (시행일) 이 기준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199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3항제2호 “마” 조항은 2002.03.01일자 이후 표창(상)부터 인정하여, 2003.03.01.일자 전보 시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3항2호의 “나” 조항은 2007.03.01일자 전보 시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3항 ‘2-마’ 조항의 조정된 가산점 평점은 2007.03.01일자 이후 표창(상) 및 수업공개교사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가. 이 기준 개정시행일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임교는 이 기준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과 전보과정의 학교로 보며, 현임교의 근무기간도 동 기준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및 인사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다. 본 기준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부칙 (2007.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1. 27.)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삭제 : 2012.11.30.)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 우선전보 규정 삭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4.3.1.자 정기전보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부칙 (2013.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1. 2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3. 1. 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제7조제9항제1호마목(일반학교 초빙비율)은 2016.3.1.자부터 적용하되, 2015.3.1.자는 15%를 적용한다.

부칙 (2015. 08.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07. 31.)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2.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와 제2호, 제7조제10항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08. 10.)

1.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2019. 08.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 마. 다) 수업공개교사 가산점은 2020.2.29.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한다.

부칙 (2020. 08. 1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2021. 08. 13.)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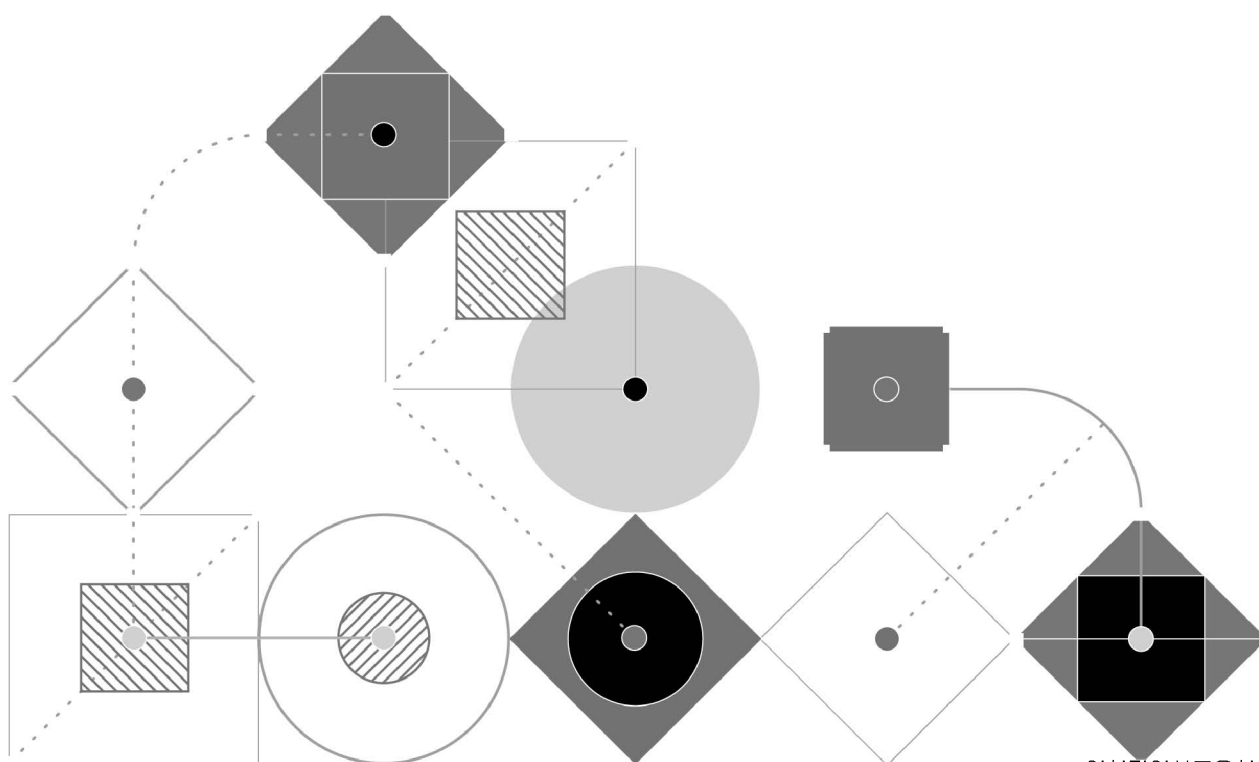
부칙 (2022. 08. 0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근무기간 및 경력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2호와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은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08. 0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004. 08. 19. 제정	2014. 11. 27. 개정
2004. 11. 30. 개정	2015. 08. 17. 개정
2005. 11. 30. 개정	2016. 08. 16. 개정
2006. 11. 30. 개정	2017. 08. 14. 개정
2007. 11. 26. 개정	2018. 08. 20. 개정
2008. 11. 30. 개정	2019. 08. 22. 개정
2009. 11. 30. 개정	2020. 08. 10. 개정
2010. 11. 30. 개정	2021. 08. 13. 개정
2011. 11. 30. 개정	2022. 08. 05. 개정
2012. 11. 30. 개정	2023. 08. 08. 개정
2013. 11. 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에 의거 관내 공립 중학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9.)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중등교원, 관내 공립 중학교 교원(교감 및 교사)에 적용한다.

제2장 신규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3조(신규임용)

-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발령된 자로서 과목별로 임용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름, 이하 같음) 신규임용후보자는 근무지를 지정할 때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 ② (삭제: 2018.8.20.)

제4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장 전 보

제5조(전보 계획)

- ①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2013.11.29.)

제6조(인사군과 전보과정)

- ① 관내 모든 중학교를 동일 급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3개 인사군과 1개 공동인사군으로 편성한다.(개정: 2014.11.27., 2019.8.22., 2020.8.10., 2021.8.13., 2022.8.5.)

1군	2군	3군	공동인사군
북인천여자중학교	가좌중학교	제물포중학교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동인천여자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	인천효성중학교	
신현중학교	신현여자중학교	인천가좌여자중학교	
계산중학교	인천안남중학교	계산여자중학교	
서곶중학교	임학중학교	북인천중학교	
백석중학교	서운중학교	검암중학교	
명현중학교	계양중학교	검단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불로중학교	작전중학교	
마전중학교	간재울중학교	원당중학교	
인천동양중학교	인천당하중학교	인천양촌중학교	
인천석남중학교	인천계수중학교	인천가현중학교	
인천초은중학교	인천청라중학교	인천해원중학교	
인천경연중학교	인천청호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	
인천아라중학교	인천이음중학교	인천루원중학교	

- ① 관내 모든 중학교를 동일 급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3개 인사군과 1개 공동인사군으로 편성한다.(개정: 2014.11.27., 2019.8.22., 2020.8.10., 2021.8.13., 2022.8.5., 2023.8.8.)

1군(9교)	2군(9교)	3군(9교)	공동인사군
동인천여자중학교	가좌중학교	제물포중학교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신현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	인천가좌여자중학교	
서곶중학교	신현여자중학교	검암중학교	
백석중학교	불로중학교	검단중학교	
마전중학교	간재울중학교	원당중학교	
인천석남중학교	인천당하중학교	인천가현중학교	
인천초은중학교	인천청라중학교	인천해원중학교	
인천경연중학교	인천청호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	
인천아라중학교	인천이음중학교	인천루원중학교	

② 근무기간

1. 동일직위, 동일교(센터 포함) 근무기간은 2년(휴직 및 파견 기간 제외) 이상 5년(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단, 담당 누적 근무기간이 3년인 경우)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간주한다. (개정: 2013.11.29., 2016.8.16., 2017.8.14., 2019.8.22., 2021.8.13.)
2.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정기전보일 현재 현임교에서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이상 근무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3.11.29., 2017.8.14., 2018.8.20., 2022.8.5., 시행: 2024.3.1.)
3. 현임교 5년 이상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5년으로 간주한다.
4.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의 현임교 근무기간은 현임교 만기근속 연한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5. 중고 간 전보 시 근무기간은 제2항제1호에 준한다. (개정: 2013.11.29., 2018.8.20.)

③ 전보서열 명부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과별로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 (개정: 2012.11.30., 2022.8.5., 시행: 2024.3.1.)

만기 근무기간	평 정 점		상 한 점
	1월	1년	
5년	0.100	1.20	6.00
3년	0.167	2.00	6.00

나. 교육활동 경력 평정(개정: 2012.11.30., 2015.8.17., 2016.8.16., 2020.8.10., 2022.8.5., 시행: 2024.3.1.)

교육활동 경력	만기 근무기간	평정점	
		1월	1년
현임교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파견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 종목 지도교사, 교무행정지원팀 소속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소속교사, 신설학교 겸임근무교사	5년	0.100	1.20
	3년	0.150	1.80

-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보직교사 경력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추가 평정할 수 있다.

(단,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만기 근무기간 5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기간	평정 방법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3년이상 3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2.4점 가산
4년이상 4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2점 가산

2) 만기 근무기간 3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기간	평정 방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2년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8점 가산

나. 교육활동 경력 평정(개정: 2012.11.30., 2015.8.17., 2016.8.16., 2020.8.10., 2022.8.5., 2023.8.8.)

교육활동 경력	만기 근무기간	평정점	
		1월	1년
현임교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과전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 종목 지도교사, 교무행정지원팀 소속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소속교사, 신설학교 겸임근무교사	5년	0.100	1.20
	3년	0.150	1.80

- 1)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만기 근무기간 5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기간	평정 방법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3년이상 3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2.4점 가산
4년이상 4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2점 가산

나) 만기 근무기간 3년의 학교(기관)

현임교 근무기간	평정 방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2년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8점 가산

- 3) 1)과 2)에서 사용한 교육활동 경력을 제외하고, 보직교사 실경력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월 0.100점을 추가 평정할 수 있다.

다. 교육 총경력 환산점

당해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 현재 호봉을 5% 환산하여 점수화한다.

단,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14.)

라. 근무성적 환산점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에서 80점을 공제한 점수의 1/20을 근무성적 환산점으로 한다. (개정: 2014.11.27., 2016.8.16., 2018.8.20.)

마. 가산점 평정

- 1) 관내 전보 희망자 중 다음 항목의 현임교 수업공개 실적이 있는 자는 관내 전보 평정점에 각각 평정하여 합산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17., 2016.8.16., 2019.8.22.)
 - (삭제: 2019.8.22.)
 - (삭제: 2016.8.16.)
 - (삭제: 2009.2.28.)
 - (삭제: 2016.8.16.)
- 2) 현임교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교사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교사에게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의 10%를 가산한다.
(신설: 2019.8.22., 개정: 2020.8.10.)
- 3)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보평정점에 월 0.025점을 가산한다.(신설: 2019.8.22.)
- 4) 현임교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의 전보 평정점에 1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8.13.)
3. 전보서열 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은 1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처리한다.
4.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는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활동경력 평정점이 높은 자, 교육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자,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4.11.27., 2017.8.14.)
5.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보유예가 확정된 자는 전보서열 명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8.10.)
6. 전보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정기전보일에 한하며, 학기 중 결원보충은 신규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④ 전보의 과정

동일직위로 동일교, 동일인사군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의 전보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인사군을 희망하되 인사군은 하나만 희망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2. 인사군에서 학교희망은 희망 인사군에 속한 학교 중 3개교까지 희망할 수 있다.
(단, 공동인사군에 속한 학교를 희망할 경우 공동인사군 및 1개의 일반인사군에서 총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2016.8.16.)

3. 직전 근무교는 희망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9.8.22.)

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다.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신설: 2013.11.29.)

라. 본 규정으로 전보 불가능한 교사(신설: 2013.11.29.)

4. (삭제: 2013.11.29.)

5. (삭제: 2009.11.30.)

6. (삭제: 2016.8.16.)

7. 특수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가. 특수교사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교육청·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전보내신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경력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로 한다. (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만기근무자는 제외)(개정: 2016.8.16., 2018.8.20., 2020.8.10., 2021.8.13.)

2) 특수교육지원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3) 현임교에서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을 3년 누적 담당하여 만기가 된 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2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9.8.22.)(개정: 2021.8.13.)

나. 전문상담교사

1) Wee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개정: 2016.8.16., 2018.8.20., 2019.8.22., 2020.8.10., 2021.8.13.)

- 1순위: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유예를 신청한 자
- 2순위: 타시도 전임교사
 - 교육경력이 적은 자
 - 생년월일이 늦은 자
- 3순위: 신규임용자

- 4순위: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전보내신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경력이 없는 교사
 - 교육경력이 많은 자
 -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 5순위: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전보내신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경력이 적은 교사(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자 순)
- 2) Wee센터 만기근무자 중, 본인의 희망과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3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2.11.30.)
8. 기타지역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6조제4항 제3호에 의한다.(신설: 2014.11.27., 개정: 2020.8.10.)

제7조(정기 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우선전보

관내 교사의 전보 시 인사군과 학교의 배정은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할 수 있다.

(개정: 2017.8.14.)

1. 교육상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서열 명부 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전입예정 인원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전보 내신 전에 공개한다.
2. 신설학교 설립사무 업무를 담당할 교사의 경우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우선전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원로교사, 전보일 기준 만 57세 이상인 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중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교사
(개정: 2013.11.29., 2014.11.27., 2017.8.14., 2019.8.22.)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7.8.14., 2019.8.22.)

① 우선전보

관내 교사의 전보 시 인사군과 학교의 배정은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할 수 있다.(개정: 2017.8.14.)

1. 교육상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서열 명부 순위에 의하여 과목별 전입예정 인원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교원 양성(兩性)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한 학교는 전보 내신 전에 공개한다.
2. 신설학교 설립사무 업무를 담당할 교사의 경우 교원조직(예정)표를 작성하는 부서의 장이 우선전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3.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전보일 기준 만 57세 이상인 교사, 순직교원의 직계가족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중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교사 (개정: 2013.11.29., 2014.11.27., 2017.8.14., 2019.8.22., 2023.8.8.)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7.8.14., 2019.8.22.)

② 학교장 요청 우선전보

다음 각 호의 교사에 한하여 해당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제1항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할 수 있다. 단,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우선전보 발령할 수 없다.

1. 체육특기 지정학교의 해당특기를 지도할 교사
2. (삭제: 2012.11.30.)
3. (삭제: 2013.11.29.)
4. (삭제: 2013.11.29.)
5. (삭제: 2013.11.29.)
6. 신설(이전)학교의 경우 3년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 (단, 전입예정교사의 20% 이내)(신설: 2014.11.27., 개정: 2015.8.17., 2016.8.16.)
7.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사
(신설: 2014.11.27.)

- ③ 희망한 학교에 전보희망 교사가 초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 ④ 관내의 교사 배치는 학교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다음 순에 의한다.
1. 관내 전보교사(개정: 2013.11.29.)
 2. 고등학교 및 타교육지원청 전입교사(개정: 2013.11.29.)
 3. 타시·도 전입교사 및 사립 특채교사
 4. 신규임용 교사
- ⑤ 전보의 유예
- 만기근속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8.14.)
1. 체육특기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실제로 지도하는 체육교사는 1년씩 2회
 2. (삭제: 2013.11.29.)
 3. 연구학교 및 정책추진 학교 근무자로서 연구추진의 주무부장 또는 주무교사 중 1명에 한하여 1년(개정: 2012.11.30.)
 4. 2년 이내에 정년퇴임 예정자는 1년씩 2회
 5. (삭제: 2013.11.29.)
 6. (삭제: 2013.11.29.)
 7.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는 1년(개정: 2013.11.29., 2019.8.22.)
 8. (삭제: 2013.11.29.)
 9. (삭제: 2014.11.27.)
 10. (삭제: 2013.11.29.)
 11.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전보의 유보
1. 대치 불가능한 교과 담당자는 계속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전보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3. (삭제)
- ⑦ (삭제: 2013.11.29.)
- ⑧ (삭제: 2009.11.30.)

⑨ 초빙교사(개정: 2013.11.29., 2016.8.16.)

초빙교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초빙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⑩ 사서교사의 전보

사서교사의 전보는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인사균, 근무기간, 전보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2년 이상 5년 이내에서 배치인원, 수급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8.8.20., 2020.8.10.)

⑪ 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 내신하여야 한다.(신설: 2019.8.22.)

제8조(비정기 전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원은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다.(개정: 2017.8.14.)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3.11.29. 2021.8.13)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6.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자
7. 교권침해 등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8. 해당학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내신한 자
9. 수석교사 직위를 면하는 자(신설: 2019.8.22.)
10.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자(신설: 2019.8.22.)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자(신설: 2019.8.22.)
12.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신설: 2021.8.13.)

제9조(중고 간 및 타교육지원청 전보)(개정: 2013.11.29., 2016.8.16.)

- ① 중고 간 및 교육지원청 간 전보는 교육장이 작성한 순위 명부에 의하여 동교과 동수로 전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급 증감으로 인한 교원 정원을 조절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또한 관내 미발령이 예상되는 교과에 대하여는 교육장이 전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8.16.)

② 교육지원청 간의 전보에 있어서 동수 교류에 따라 전보가 불가능한 자의 전보는 관내전보로 대치할 수 있다.

③ 타교육지원청 전보의 순위는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단,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9.8.22., 2020.8.10.)

④ (삭제: 2013.11.29.)

⑤ 중·고 간 전보의 순위는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다.

(개정: 2013.11.29., 2019.8.22., 2020.8.10.)

제9조의2(유·초·중등 간 교류) 보진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유·초·중등 간 교류는 동교과,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방교류 할 수 있다.(신설: 2020.8.10., 2021.8.13.)

①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서열 평정점은 필요한 경우 중등교사로 간주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산정한다.

제10조(교감의 전보)

① 교감의 전보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인사군, 근무기간, 전보의 과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교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범위 내에서 해당직 경력, 지도관리능력, 청렴성, 학교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단,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년으로 한다.)(개정: 2015.8.17.)

② 교감은 내신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7조제5항제4호와 제8조는 이를 교감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의2(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전보한다.(신설: 2014.11.27.)

제4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11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학교의 실정에 따라 약간 명의 인사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학급담임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9.)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또는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0.)
 5. 우선전보 요청자 또는 전보 유예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8.20.)
 6. 교육활동 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13.)
 8.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적·기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5.8.17.)

부 칙(2005.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기준 개정 시행일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임교는 이 기준 제6조에 규정된 인사군과 전보과정의 학교로 보며, 현임교의 근무 기간도 동 기준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내전보 시 2001. 3. 1자 이전 전입한 교사 중

- (1) 계양중, 검단중, 백석중, 신현중, 신현여중, 서곶중, 검암중 소속교사의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은 다음과 같다.

현 임 교	평정점		상한점
	월	1년	
계양중, 검단중	0.140	1.68	5.00
백석중, 신현중, 신현여중, 서곶중, 검암중	0.105	1.26	5.00

- (2) 계양중 소속교사는 제6조제4항제3호에서 제외한다.

다. 2007. 3. 1자 인사까지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제6조제4항과 관련하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하는 교사는 인사군에 관계없이 직전교를 제외한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
- (2) ‘제7조제4항제2호 관외 전입자 및 고등학교 전입자’의 관내 배치에 있어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입하는 교사는 북부교육지원청 이외 관외 및 고등학교 전입자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 (3) (전보유예의 특례) 신현중, 신현여중, 서곶중, 검암중 근속만기자 중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당해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하여 1년씩 1회까지 전보 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라. (교육활동 경력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07. 2. 28.자 발령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전보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 2. 28. 이전 현임교 발령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3.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 따른다.
4. 제6조제3항제2호마목(수업공개 실적)는 2005. 3. 1.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7조제6항제3호 ‘계양중 근속만기자 중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당해연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하여 1년씩 3회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는 조항 삭제는 2008. 3. 1.자로 계양중학교에 인사발령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마목 수업공개실적은 2010.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삭제 : 2012. 11. 30.)

부 칙(2010.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가) 제7조제9항제2호 단서 조항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나) 제7조제9항제3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1. 2. 28 이전에 현임교에 전입한 자는 삭제 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1.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사 우선전보 규정 삭제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4. 3. 1.자 정기전보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다.

부 칙(2013.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1. 2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제7조제9항제1호마목(일반학교 초빙비율)은 2016. 3. 1.자부터 적용하되, 2015. 3. 1.자는 15%를 적용한다.

부 칙(2015. 8. 17.)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1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인천동양중학교 3년 만기자 점수는 2016년 3월 1일 전입자까지 적용하여 부여한다.
3.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구별 자율장학 시범수업 교사(0.3점), 교내자율장학 계획에 의한 수업공개 교사(0.1점)는 2016학년도까지 부여받은 가산점을 인정한다.

부 칙(2017. 8. 14.)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8. 20.)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19. 8. 22.)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마목 1)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주도의 수업코칭을 받은 교사(0.3점)는 2019학년도까지 부여받은 가산점을 인정한다.

부 칙(2020. 8. 10.)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21. 8. 13.)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2022. 8. 5.)

1.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근무기간 및 경력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2호와 제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은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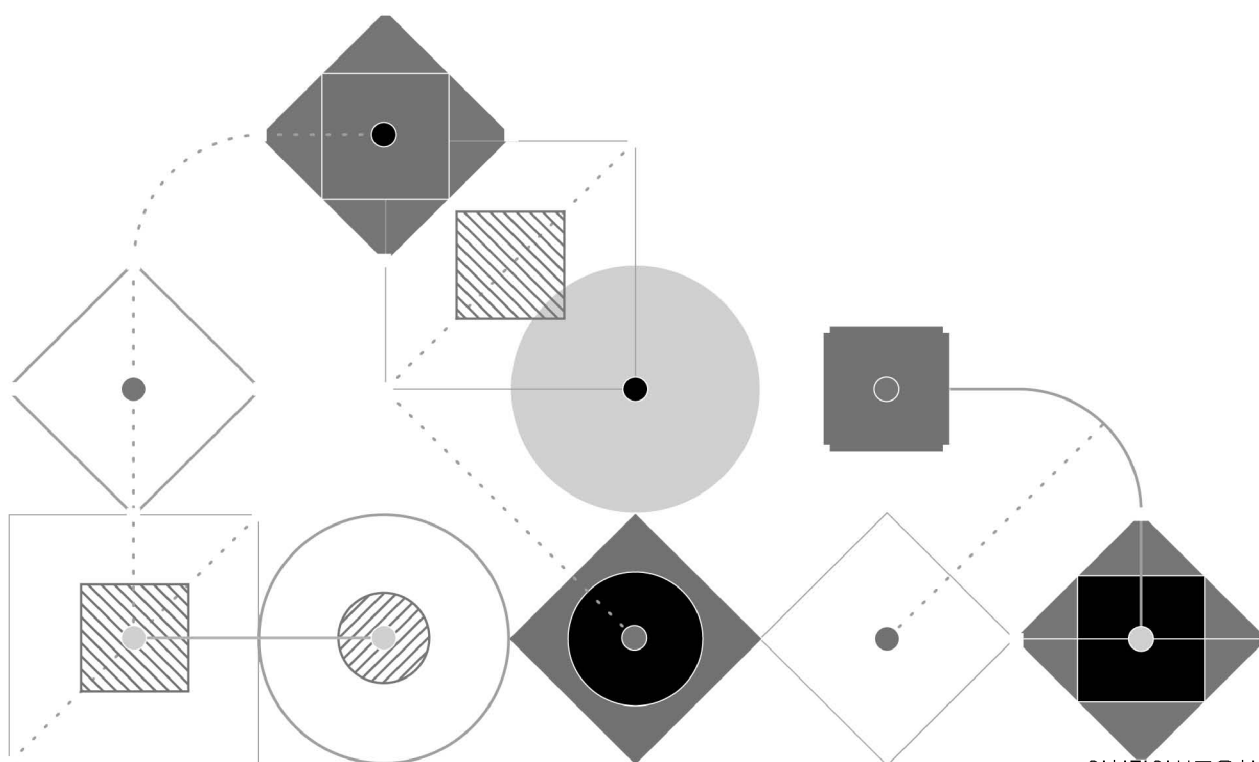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4.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26. 3. 1.자 인사까지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6조제④항과 관련하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하는 교사는 인사군에 관계 없이 직전교를 제외한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

(2) 제7조제④항제2호 ‘타교육지원청 전입자 및 고등학교 전입자’의 관내 배치에 있어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입하는 교사는 북부교육지원청 이외 관외 및 고등학교 전입자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1995. 11. 22. 개정	2004. 11. 29. 개정	2015. 8. 17. 개정
1996. 11. 25. 개정	2005. 11. 30. 개정	2016. 8. 10. 개정
1997. 11. 27. 개정	2005. 12. 08. 개정	2017. 8. 10. 개정
1998. 11. 20. 개정	2006. 11. 28. 개정	2018. 8. 10. 개정
1999. 11. 25. 개정	2008. 11. 27. 개정	2019. 8. 20. 개정
2000. 12. 20. 개정	2009. 11. 30. 개정	2020. 8. 20. 개정
2001. 1. 17. 개정	2010. 11. 30. 개정	2021. 8. 6. 개정
2007. 11. 30. 개정	2011. 11. 21. 개정	2022. 8. 8. 개정
2001. 12. 11. 개정	2012. 11. 30. 개정	2023. 8. 8. 개정
2002. 12. 10. 개정	2013. 11. 29. 개정	
2003. 11. 25. 개정	2014. 11.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20.)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중등교원, 관내 공립 중학교 (삭제: 2013.11.29.)의 교원(교감, 교사)에 적용한다.(개정: 2019.8.20.)

제2장 신규 및 계약제교원의 임용

제3조(신규임용) ① (삭제: 2019.8.20.)

② (삭제: 2019.8.20.)

③ (삭제: 2019.8.20.)

④ 교사의 신규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으로 발령된 자로서 과목별로 임용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

규칙」에 따름, 이하 같음) 신규임용후보자는 근무지를 지정할 때 생활근거지를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19.8.20.)

제4조(계약제교원의 임용) 계약제교원의 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장 전보

제5조(전보계획) ① 소속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삭제: 2004.2.29.)

제6조(인사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인사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7., 2017.8.10., 2019.8.20., 2020.8.20., 2021.8.6.)

인사군	학 교 (기 관) 명	학 교 수
기타 1군	강남중학교, 심도중학교	2교
기타 2군	강화중학교, 강화여자중학교	2교
기타 3군	강서중학교, 교동중학교	2교
기타 4군	서도중학교	1교
공동 인사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2센터

제7조(동일교 근무기간 및 유예) ① 동일교, 동일직위 근무기간은 2년(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이상 3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단, 담당 누적 근무기간이 3년인 경우)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간주한다. 또한,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7., 2016.8.10., 2017.8.10., 2019.8.20., 2020.8.20., 2021.8.6., 2022.8.8.)

인사군	학 교 (기 관) 명	동일교 근무기간	해당자 유예기간
기타 1군	강남중학교, 심도중학교	2년-3년 이내	1년씩 2회
기타 2군	강화중학교, 강화여자중학교		
기타 3군	강서중학교, 교동중학교	2년-3년 이내	없음
기타 4군	서도중학교	2년-3년 이내	1년씩 1회
공동 인사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2년-3년 이내	1년씩 3회

② 만기근속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얻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유예 가능 학교(기관) 근무자로서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교사근무성적 평정점이 ‘우’ 이상인 자(개정: 2017.8.10., 2019.8.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는 1년(개정: 2017.8.10., 2019.8.20.)
3. 2년 이내 정년퇴임예정자는 1년씩 2회(신설: 2013.11.29.)
4.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1년 (신설: 2013.11.29.)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개정: 2019.8.20.)

제7조의2(전보의 유보) 만기근속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보할 수 있다. (신설: 2020.8.20.)

- ① 대치 불가능한 교과담당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20.8.20.)
- ② 전보교류가 불가능한 교사는 전보교류가 가능할 때까지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신설: 2020.8.20.)

제8조(정기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에서 2년 이상(휴직 및 파견기간 제외) 동일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8.10.) 다만, 동일교에서 재직교사의 1/2 이상은 관내외를 포함하여 동시에 전보내신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 ② (삭제: 2019.8.20.)
- ③ (삭제: 2019.8.20.)
- ④ (삭제: 2019.8.20.)
- ⑤ (삭제: 2023.8.8.)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에 한하여 해당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우선전보 발령할 수 없다.

1. 체육특기지정학교의 해당 특기를 지도할 교사
2. (삭제: 2008.11.29.)
3. (삭제: 2019.8.20.)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교사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배우자, 부모, 자녀)’ 을 직접 부양하는 중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 (신설: 2021.8.6.)
6.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신설: 2022.8.8.)
7. 기타 교육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사 (신설: 2023.8.8.)
- ⑦ 희망한 학교에 전보희망교사가 초과될 경우,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19.8.20.)
- ⑧ 초빙교원(개정: 2019.8.20.)
 1. 초빙교사의 비율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초빙교원 임용 대상자, 임용절차, 인사 및 교원초빙 응모자 제출서류는 ‘학교장·교사 초빙제 운영지침’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중등) 제5조 제2항 제1호’ 의 A, B, C 지역은 초빙을 할 수 없다.(개정: 2019.8.20.)
 3. 기타인사군 소속 전보대상교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 에 의해 가산점을 받는 특수지역 학교로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1.8.6., 개정: 2022.8.8.)
- ⑨ 자녀(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 내신하여야 한다. 단, 교원수급 및 인사교류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8.6., 개정: 2022.8.8.)

제8조의2(유·초·중등간 교류)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초·중등간 교류는 동 교과,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방교류 할 수 있다.(신설: 2020.8.20., 2021.8.6.)

- ①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서열 평정점은 필요한 경우 중등교사로 간주하여 제10조 2항에 따라 재산정 한다. (신설: 2021.8.6.)

제9조(전보과정) 동일직위로 동일교, 동일구역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의 전보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사의 학교간 전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6.8.10.)
 1.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기타 인사군 1, 2, 3군에 속한 학교 중 3개교까지 희망할 수 있다. 단, 공동인사군 소속 기관을 희망할 경우 공동인사군 및 기타 1, 2, 3군에서 총 3개교를 희망할 수 있다.(개정: 2019.8.20., 2020.8.20.)
 2. (삭제: 2019.8.20.)
 3.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직전 근무교는 희망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가.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 나. 본 규정으로 전보 불가능한 교과 교사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배우자, 부모, 자녀)을 직접 부양하는 교사,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사(개정: 2017.8.10., 2019.8.20.)
 라.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로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사
- ② (삭제 : 2016.8.10.)
- ③ ‘기타 1군’, ‘기타 2군’, ‘기타 3군’ 으로의 전보는 전보서열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9.8.20., 2020.8.20.)
- ④ ‘기타 4군’ 을 포함한 기타지역 전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제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되, 관내 교사의 전보 유예는 이 기준 제7조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0.8.20.)
 1. (삭제: 2004.11.29.)
 2. (삭제: 2020.8.20.)
 3. (삭제: 2009.11.30.)
 4. (삭제: 2009.11.30.)
 5. (삭제: 2019.8.20.)
 6. (삭제: 2020.8.20.)
- ⑤ 신규교사는 당해교의 교원조직상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⑥ (삭제: 2022.8.8.)
- ⑦ (특수교사) 특교육지원센터,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으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및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와 관내 전보내신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과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경력이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로 한다. (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만기근무자는 제외) (신설: 2016.8.10., 개정: 2018.8.10., 2019.8.20., 2020.8.20., 2021.8.6.)

1. 현임교에서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을 3년 누적 담당하여 만기가 된 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1년씩 2회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1.8.6.)
- ⑧ (전문상담교사) Wee센터로의 전보는 희망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신설: 2019.8.20.)(개정: 2020.8.20., 2021.8.6.)
 1. 1순위: Wee센터 만기 근무자 중, 유예를 신청한 자
 2. 2순위: 타시도 교육청 전임교사
 - 가. 교육경력이 적은 자
 - 나. 생년월일이 늦은 자
 3. 3순위: 신규임용자
 4. 4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타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 센터 근무경력이 없는 교사 (2021.8.6.)
 - 가. 교육경력이 많은 자
 - 나.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5. 5순위: 관내전보내신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타교육지원청 등에서 전보가 예정된 자 중에서 Wee센터 근무 경력이 적은교사(경력이 동일할 경우 전보서열 평정점이 낮은 자 순)

제10조(전보서열명부 작성) ① 전보서열명부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과별로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항목 및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개정: 2013.11.29., 2016.8.10., 2020.8.20., 2022.8.8.)

인사군	평 정 점		상한점
	월	1년	
기타 1, 2, 3, 4군, 공동	0.167	2.00	6.00

다만, 정원감축, 교과조절에 의해 전보되는 교사의 현임교 근무기간은 만기로 간주한다.

나. 교육활동 경력 평정 (개정: 2013.11.29., 2015.8.17., 2016.8.10., 2020.8.20., 2022.8.8., 2023.8.8.)

교육활동 경력	평 정 점	
	월	1년
학급담임, 보직교사, 파견교사(연수파견 제외), 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종목 지도교사, 교무행정지원팀 소속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소속교사, 신설학교 겸임근무교사	0.150	1.80

1) 중복 시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정원감축 또는 교과조절에 의하여 만기 전에 전보되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임교 경력	평정방법
1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3.6점 가산
2년 이상 2년 11월 이하	‘나’에 의거 평정 후 1.8점 가산

3) 1)과 2)에서 사용한 교육활동 경력을 제외하고, 보직교사 실경력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월 0.100점을 추가 평정할 수 있다.

다. 교육총경력 환산점 :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호봉을 5% 환산하여 점수화한다. 다만,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8.10., 2017.8.10.)

라. 근무성적 환산점 : 전보 순위명부 작성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학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에서 80점을 공제한 점수의 1/20을 근무성적 환산점으로 한다.(개정: 2014.11.27., 2016.8.10., 2018.8.10., 2019.8.20.)

② 전보서열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은 1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처리한다.

③ 전보서열 평정점 합계가 동점인 경우는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이 높은 교사, 교육활동경력 평정점이 높은 교사, 교육 총경력 환산점이 높은 교사, 근무성적 환산점이 높은 교사,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순으로 한다.(개정: 2014.11.27., 2017.8.10.)

④ (삭제: 2004.2.29.)

⑤ 현임교 3년 이상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11.29.)

⑥ (삭제: 2013.11.29.)

⑦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보유예가 확정된 자는 전보서열 명부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8.20.)

제11조(전보서열명부 시효) 전보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정기전보일에 한하며, 학기 중 결원보충은 신규임용 대기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정기 전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원은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또는 전보 내신할 수 있다.

-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 ②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 ③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및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개정: 2013.11.29., 2021.8.6)
- ④ 당해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 ⑤ 직위해제 후 복직된 교원
- ⑥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요구된 교원
- ⑦ 교권침해 등 그 밖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원
- ⑧ 해당학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내신한 교원
- ⑨ 수석교사 직위를 면하는 자(신설: 2019.8.20.)
- ⑩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자(신설: 2019.8.20.)
- ⑪ 징계처분기록 말소 또는 사면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 처분 사안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분리가 필요한 자 (신설: 2021.8.6.)

제13조(전보의 우대) (개정: 2013.11.29., 2016.8.10.) ① 현임교(기관) 재직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한다.

호	대 상 자	가산점	적용 기준
1	가. 55세 이상이며 경력 30년 이상으로 교직수당가산금을 받는 교사 (개정: 2017.8.10.) 나. 원로교사	0.125점	1회 적용
2	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대회에서 전국 3등급이내 입상한 학생을 지도하여 지도상 또는 표창장을 받은 교사 나. 전국소년체전에서 학생을 입상시킨 교사	0.25점	
3	가. 시교육청 주최 대회에서 인천시 3등급 이내 입상 학생을 지도하여 지도상 또는 표창장을 받은 교사 나. 전국소년체전 예선전에서 학생을 입상시킨 교사	0.125점	
4	가. 관내 중등교과연구회 회장으로서 운영실적이 우수한 교사 나. (삭제: 2021.8.6.) 다. (삭제: 2019.8.20.)	0.125점	
5	가. 관내 장학(수업)지원단으로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나. 강화영재교육원 및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 총괄교사 및 담임교사(신설: 2016.8.10.)	0.125점	
6	가. 학년말 교육활동 유공교원으로 선정되어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수상한 교사(단, 당해학교 근무기간 중 1회만 인정)	0.125점	1회 적용
7 (삭제: 2019.8.20.)			

- ② 제1항에서 호를 달리하거나 학년도를 달리하는 모든 가산점을 인정하여 평정한다.
다만, 당해학년도 동일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1개만 인정한다.(개정: 2017.8.10., 2019.8.20.)
- ③ 제1항의 가산점의 적용은 현임교 재직 기간 중 3개 학년도에 해당하는 가산점만 인정하며, 가산점의 상한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8.20.)
- ④ 가산점 평정은 제1항의 가산점과 별개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신설: 2019.8.20.)
1. 강화군 서도면 소재 학교에서 만기근무한 교사의 전보 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19.8.20.)
 2. 현임교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교사 또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교사에게 현임교 근무경력 평정점의 10%를 가산한다.(신설: 2019.8.20.)(개정: 2020.8.20.)

3. Wee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보평정점에 월 0.025점을 가산한다.(신설: 2019.8.20.)
4. ④항의 1(강화군 서도면 소재 학교)호를 제외한 지역에서 만기근무한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전보평정점에 0.5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8.6.)
5. 현임교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의 전보 평정점에 1점을 가산한다. (신설: 2021.8.6.)

제14조(교감의 전보) ① 교감의 전보는 동일교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범위 내에서 해당직 경력, 지도관리능력, 청렴성, 학교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29., 개정: 2021.8.6.)

② 교감은 내신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제3호와 제5호, 제12조는 교감에게도 적용한다.

제14조의2(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하여 전보한다.(신설: 2014.11.27.)

제4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15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변경: 2013.11.29.) ① 단위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감 미배치교는 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년·학급담임·교과전담교사 배정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무 분장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우선 전보 요청자 및 전보 유예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활동 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6.)
8. 그 밖에 학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자문할 경우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8.17.)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은 개정시행일 현재 교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현임교는 이 기준 제6조부터 제9조에 규정된 인사군과 전보과정으로 보며, 현임교의 근무기간도 동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삭제 (2004. 11. 29)
4. 삭제 (2004. 11. 29)
5.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중등) 및 인사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6. (직전교 전입 희망에 대한 경과 조치) 제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004. 2. 29 이전에 강화지역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7. (교동중, 서도중, 서도중불음분교 교사에 대한 경과 조치) 제9조 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2004. 2. 29.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4.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5.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2. 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가산점 공제에 대한 경과 조치)
제9조 제4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 9.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3. (교육활동 경력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2007. 3. 1.자 발령 시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6. 11. 2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가산점 공제에 대한 경과 조치)
제9조 제4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9.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하며 그 전 발령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11. 2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9.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가. (강화지역고교전보)제8조 제2항·제3항, 제9조 제4항 제2호 수정에도 불구하고 2010. 2. 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강화지역고교전보)제9조 제4항 제3호·제4호의 단서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0. 2. 28. 이전에 현임교에 전보된 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 제13조(전보의 우대) ‘가산점’의 적용은 2011.03.01. 전보부터 한다.

부 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2. (경과 조치)
가. (초빙교원)제8조제7항 단서 조항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1. 21.)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1. 30.)

1. (시행일) 이 기준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 가. 제7조(동일교 근무기간 및 유예)제1항은 2014.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 나. 제13조(전보의 우대)제6항은 2014.3.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1. 2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2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3. 1.자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8. 17.)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7. 3. 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8.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 3. 1.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2.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3항은 2019. 3. 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8. 10.)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 (2019. 8.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에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한 교사(0.125)는 2019학년도까지 부여받은 가산점을 인정한다.

부 칙 (2020. 8.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 단, 제9조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4군에 대한 2024년 3월 1일자 정기전보까지는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소속 교사(2020년 3월 1일자까지 발령된 자)에 한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6.)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적용하되, 2022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부 칙 (2022. 8. 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
2. (경력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은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8. 8.)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한다.